충청남도 보육료 현실화를 위한 대책방안 모색

의정토론회

■일 시: 2019. 6. 4.(화) 13:30

■ 장 소: 아산시 청소년교육문화센터

■주 최: 충청남도의회



의정토론회 진행 안내

토론회 개요

■ 일 시: 2019. 6. 4.(화) 13:30~

■ 장 소: 아산시 청소년교육문화센터 스마트홀

■ 주 최: 충청남도의회

■ 주 제: 보육료 현실화를 위한 대책방안 모색

진 행 흐 름

<i>プ</i>	시 간 까지	소요	내 용	비고								
	<개회식>											
13:30	13:35	5′	개회 및 국민의례	사회:문화복지위원회 전문위원								
13:35	13:40	5′	내빈소개, 개회사 등	좌장 (여운영 의원)								
			〈토론회〉	※ 꽈깡: 여운영 의원								
13:40	14:10	30'	주 제 발 표 ・이용환/혜전대학교 교수 ☞ 충남 민간어린이집 보육료 현실화 방안 고찰									
14:10	14:50	40′	지정토론 •박정예/아산 새싹어린이집 원장 •장찬우/굿모닝충청 충남취재본부장 •장희선/어린이집 학부모 •손유경/안전지도자협회 사무국장 •이태규/충청남도 출산보육정책과장	토론자 전체								
14:50	15:25	35′	종 합 토 론	참여자 전체 (발제자·토론자·청중)								
15:25	15:30	5′	정 리 및 폐 회	좌 장 (여운영 의원)								

목 차

	주제발표
	충남 민간어린이집 보육료 현실화 방안 고찰 ······· 3 이용환(혜전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
	지정토론
	민간어린이집 운영난 해소를 위한 보육료 현실화 ······ 27 박정예(아산 새싹어린이집 원장)
	충남 민간보육료 현실화 방안 제시 ···································
	충남 민간 어린이집 보육료 현실화, 우리가 해야 할 책무입니다 … 55 장희선(어린이집 학부모 대표)
F	보육료의 현실화
F	충청남도의 보육정책 현황 ···································

주제발표

충남 민간어린이집 보육료 현실화 방안 고찰

이 용 환

혜전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

충남 민간어린이집 보육료 현실화 방안 고찰

혜전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 이 용 환

보육료는 월말에 들어오지 통장에 잔고는 없지, 그렇다고 원아모집이 100% 다 채워지지 안했지... 그러니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게 원장 주머니 털기죠. 식비며 인건비 등은 다 사비를 털어야 했지요. 나도 열심히 일했는데 난 돈을 받는 게 아니라 갖다 주면서 다른 사람 월급 주는데 괜히 서럽기도 했어요.

그나마 원장이 급여를 못 받는 것에 대해서는 어디에서도 뭐라고 안하니 내가 받을 급여에 서 아이들 식비로 내고 교사 월급 줄 수밖에 없죠.

가족들도 돈 퍼주면서 일하냐고 하고 남편이 번 돈 집어넣다 보니 자연스럽게 우리 가족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게 되고 정말 힘들어요. (A 원장과의 면담, 2017. 6. 5.)

진상 엄마들... 떠보는 엄마들이 너무 많았다. 일주일 다니다가 그냥 안 다닐래요 해서 보니 양육수당에서 보육료 전환도 안 해놓고 있었어요. 그러니 시험 삼아 다녀보고 안 나오는 엄마들이 은근히 많죠. 그런 엄마들은 보육료를 받을 길이 없어요. 수고는 수고대로 시간은 시간대로 식재료비는 식재료비대로 나가서 속상해요. 그런 엄마들을 꼭 돈 내게 하는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어요. (D 원장과의 면담, 2017. 6. 28.)

출처: 이정화(2017).

I . 서론

1991년 1월 14일 제정된 영유아보육법은 2019년 5월 현재까지 66차례가 개정되었고, 같은 법 시행령은 49회, 시행규칙은 53회가 개정되었지만 아직도 한국 보육사업 운영의 핵심 요소인 보육료 적정수준은 수요·공급자는 물론 법적, 제도적, 정책적인 현실성을 극복하지 못한 채 오늘에 이르고 있다.

저출산 위기 극복과 더불어 영유아기 보육에 대한 국가와 사회적 책임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3-5세 누리과정 및 0-2세 무상보육 시행과 양육수당의 지급 등 새로운 육아지원정책이 지속적으로 시행되어 정부의 재정투자가 증가하였다. 2012년 5세 누리과정 시행을 시작으로 유아교육과 보육사업이 양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이에 대한 정부의 투입 예산은 2012년 9조 8천억 원에서 2014년 14조 9천억 원으로 증가하여 GDP 대비 1%를 넘었고 이후 유아교육과 보육사업에 투입되고 있는 예산은 중앙정부

와 지방정부를 합하여 15조 원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박진아 외, 2017). 그동안 보육재정의 증가는 영유아를 양육하는 부모의 가계부담 완화 측면이 강하였으나 누리과정과 무상보육 확대 이후 보육 서비스의 질 제고와 직결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영유아에게 양질의 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표준보육료 산정은 중요한 선행 작업이라 할 수 있다(서문희 외, 2014).

보육료란 보육의 대가(代價)로 지불되는 비용으로 수요자에게는 어린이에 대한 인지 발달과 안전한 돌봄에 대한 감사함과 보육료 납부의 부담감이라는 양면성이 존재하 며, 공급자에게는 보육서비스의 품질혁신과 경영상의 효율성, 보육과정의 효과성 추구 라는 구조적인 측면이 있다.

보육기관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부분 지자체의 보조금과 일부 학부모 보육료 (필요경비)로 구성되며, 편성된 1회계 연도의 예산은 유사한 28개 사회복지사업과 같이 엄격한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집행되고 있다.

현실화(realization)는 사전적으로 현실과 동떨어진 제도나 규칙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을 의미하며, 경제적으로는 공공요금 등 정부가 정책적으로 통제하는 가격을 실제로 형성되는 시가(時價)에 준하여 조정(readjustment)하는 것을 지칭한다. 즉, 현재의 사실이나 형편의 문제로써 실제로 존재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따라서보육료 현실화란 어린이들에게 제공되는 보육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보육료의 금액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수요자와 공급자가 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형평성이 강조된다.

정부는 지난 10여 년간 150조원(경기도형 보육정책 대 토론회, 2016)이라는 국민적 조세부담을 집행하면서 보육기관의 질적 향상 및 보육교사의 처우개선, 영유아 보호 자의 보육비용 경감, 보육인의 전문성 제고 등에 노력하여 왔다. 그러나 영유아 인권문제의 대두 등으로 인한 규제강화와 현실성이 부족한 보육료 책정, 비전문가와 잦은 전직에 의한 획일적인 보육행정, 정치적으로 실현의 끝이 보이지 않았던 유·보 통합논의 등으로 많은 시간과 행정력을 소모했다.

더욱이 2001년 합계출산율 1.3 이래 2018년 0.98을 기록하였고, 2019년부터는 사망자가 출생자보다 많아지는 인구감소가 예측되는 등 36개 OECD회원(2018년 7월 현재)국가 중 최하위의 초저출산 사회로 추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결과의 여파로 어린이집은 원아수가 급감하는 등 민간위주의 한국 보육사업은 침체(沈滯)의 길에 접어들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공급자인 보육기관과 직접적 수요자인 어린이와 보호자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당

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누릴 수 있는 권리가 보육료 현실화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국가는 보육료 시스템을 체계화하고 현실화시킬 필요성이 있으며, 사회적 공공자원으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특히 국가는 보육서비스의 재정적 부담이 궁극적으로 국민의 세금에 의해 의존된다는 인식하에 영유아와 보육인 모두가 동의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욕구를 충족시켜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다. 즉, 보육료 현실화는 수요자인 영유아와 보호자, 공급자인 보육교직원 모두가 필연적으로 동의할 때 가치가 실현될 수 있다.

결국 보육료 현실화는 보육기관의 정당한 노동에 따른 최적의 보수와 근무조건 개선 등 사회복지 차원의 사기 진작으로 귀결될 수 있으며, 그 마지막 터미널은 어린이들을 위한 보육서비스의 품질향상에 있다.

법제정 후 28년간 168차례의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도 영유아의 보호자와 보육교직원 그리고 국민들로부터 많은 공감과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영유보육사업을 재조명하 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판단된다.

이에 따라 본 글에서는 문헌과 선행연구, 관련 보육교직원 등과의 심층 인터뷰와 FGI를 토대로 보육료 현실화와 관련된 관련 법령의 검토, 현황과 실태 등을 모색한 후충청남도 민간어린이집 보육료 현실화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 하고자 한다.

Ⅱ. 충청남도 보육현황

2019년 4월 현재 충남 보육기관 어린이 현원을 <표1>과 <표2>에서 살펴보면 영유아 61,369명중 53%인 32,484명의 영유아가 민간어린이집에 재원하고 있어 충남 보육서비스의 수준은 민간보육이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민간어린이집의 재정적인 안정을 바탕으로 보육기관으로써의 제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지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며, 그 문제점을 개선 및 보완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한 일이다.

<표1>연도별 현황

(단위 : 개소/명)

구 분	'19.4월말	'18.12월말	'17.12월말	'16.12월말	'15.12월말	비고
어 린 이 집	1,856	1,916	1,955	1,974	1,988	'18년말 대비 60개소 ↓
영 유 아	61,369	68,411	69,787	69,364	68,750	'18년말 대비 7,042명 ↓
보 육 교 직 원	14,595	15,828	15,607	15,202	14,937	'18년말 대비 1,233명 ↓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충청남도(2019.4월 현재)

<표2>유형별 현황

구	분	계	국공립	법인	법인등	민간	가 정	협동	직장
	기관수	1,856	110	116	49	607	920	2	52
보육기관	평가인증	1,621	90	102	42	529	826	1	31
	인 증 률	87.33%	81.81%	96.22%	85.71%	87.14%	89.78%	50.00%	59.61%
	정 원	84,335	6,203	9,880	2,952	44,600	16,845	66	3,789
영 유 아	현 원	61,369	5,151	6,155	2,045	32,484	12,546	60	2,928
	충족률	72.76%	83.04%	62.29%	69.27%	72.83%	74.47%	90.90%	77.27%
교직원	전 체 인 원	14,595	1,146	1,335	468	6,261	4,625	12	748
	보육 교사	9,570	757	855	288	4,309	2,821	8	532

(단위 : 개소/명)

(단위 : 명)

(단위 : 명)

<표3>지자체별 민간어린이집 재원 아동 현황

.) =	2	41.1	A .1	
시·군명	계	영아	유아	시·군 영·유아 비율 (%)
계	32,484	13,023	19,461	100.00
천안시	10,572	4,275	6,297	32.54
공주시	903	374	529	2.78
보령시	1,078	526	552	3.32
아산시	7,545	2,623	4,922	23.23
서산시	3,530	1,359	2,171	10.87
논산시	1,503	520	983	4.63
계룡시	574	253	321	1.77
당진시	3,960	1,511	2,449	12.19
금산군	313	141	172	0.96
부여군	153	82	71	0.47
서천군	189	81	108	0.58
청양군	142	100	42	0.44
홍성군	976	705	271	3.00
예산군	540	230	310	1.66
태안군	506	243	263	1.56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재구성, 충청남도(2019.4월 현재)

<표4>보육교직원 직위별 현황

계	원장	보육교사	특수교사	치료사	간호사	영양사	조리사	기타
14 505	1,847	9,570	38	26	59	46	849	2,160
14,595	(12.65)	(65.57	(0.25)	(0.17)	(0.40)	(0.31)	(5.81)	(14.79)

^{*}기타:평가인증보육도우미,운전원 등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충청남도(2019.4월 현재)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충청남도(2019.4월 현재)

<표5>보육교사 현황

합계	교사겸직 원장	담임교사	대체교사	制产业	시간연장형 교사	24시간 교사	시간제 교사	보조 교사	누리과정 교사
10,604	1,037	7,628	38	8	167	2	2	1,261	461

(단위 : 명)

- ※ 보육교사 현황은 교사겸직원장 포함으로 총괄현황의 보육교사 수와 다름
-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충청남도(2019.4월 현재)

Ⅲ. 보육료 관련 선행연구 검토

1. 보육료관련 법령 검토

영유아보육법 제34조 제1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을 무상으로 하되,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어린이집의 설치, 증축ㆍ개축 및 개수ㆍ보수비용, 보육교사 인건비, 교재ㆍ교구비, 보수교육 등 직원 교육훈련 비용,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 비용, 그 밖에 차량운영비 등 보건복지부장관 또는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으로써 전부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장애아 및 다문화가족 자녀의 무상보육에 대하여는그 대상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 표준보육비용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을 정할 수 있으며,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표준보육비용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준보육비용을 결정하고 있다.

어린이집의 재정은 필요경비 등 보호자가 일부 부담하는 보육료와 시·군·구의 보조금으로 구성된다. 영유아보육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사(대체교사 포함)의 인건비, 초과보육(超過保育)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또한 영유아보육법 제38조는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그 어린이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범위에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시·도지사는 필요시 어린이집 유형과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그 기준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어린이집 운영비의 70%는 대부분 보육교직원의 인건비로 지출된다.

2. 보육료 관련 보육사업 안내(2019년)

보육료 수납액의 결정권자는 시·도지사로서 영유아보육법 제38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유형 및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연도별 보육료의 수납한도액을 매년 1월말까지 결정하고 수납한도액 결정 즉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원에 공문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수납한도액의 결정 원칙은 만 0~5세 보육료(다문화 보육료 포함)의 경우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받는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영아전담·장애아전문어린이집과 직장어린이집 중 고용보험기금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거나, 국가 또는 지자체가 설치 운영하는 정부지원어린이집과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는 정부미지원어린이집 중 영아반(만0세~만2세)의 경우에는 정부의 보육료지원 단가 범위 내에서 결정한다.

원장은 시·도지사가 정한 보육료의 수납한도액 범위 내에서 보호자와 협의하여 수 납액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가 정한 보육료 등 수 납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어린이집 원장이 수납액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적극지도하고 있다.

어린이집 원장은 수납액을 어린이집에 게시하고 입소를 희망하는 보호자에게 사전에 필히 서면으로 안내하여 보호자들이 숙지하도록 하고 있다.

보육료는 신청일부터 지원하므로, 입소 전 또는 입소와 동시에 주소지 읍·면·동 또는 복지로(http://bokjiro.go.kr)에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정부미지 원시설을 이용하는 유아의 경우 어린이집에서 결정한 보육료 수납액과 정부지원보 육료의 차액을 부모로부터 수납(부모부담보육료) 가능하나 법정저소득층과 장애아동은 부모부담이 없다.

어린이집은 아동의 입·퇴소 월, 출석일수 미달 등의 사유로 정부지원보육료를 100%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 미지급 금액을 부모로부터 수납할 수 있으나 보육료 지원 및 수납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모에게 보육료 수납기준을 사전에 고지하고 상호합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지원 보육료의 재원은 국비 65%, 도비 17.5%, 시·군비 17.5%로 구성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회복지사업비 보조금 중 국비부담이 70%이상인 점을 감안할 때약 5% 이상이 지방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현재 영유아보육사업비의 국비지원 비율을 더 증액하여 열악한 지방비 부담을 낮추는 정책적 조치가필요하다.<표6> 2019년 어린이집 필요경비 표준안

항	목	내 역	수납주기	수납주기별 한도액
입학	상해 보험료	상해보험료 (안전공제회 당연가입 시행 이전 旣 가입자 또는 부모 요청)	연	
준비금	피복류 구입비	원복, 체육복, 모자, 가방, 수첩, 명찰	연	
특별	활동비	특별활동 강사 인건비, 특별활동 교재교구 구입비, 특별활동 운영 소요경비 (해당 특별활동 프로그램 실시에 따른 교재교구의 구입에 한함)	얼	
현장	학습비	현장학습비, 수련회비, 견학비	분기	
차량·	운행비	통학차량 이용시로 한정	월	
행.	사비	입학, 졸업, 연말, 생일, 재롱잔치 어린이날, 여름캠프, 성탄절 행사비 및 개인용 앨범비, 액자제작비 등	연	
아침·저녁 급식비 아침, 저녁 급식비		월		
기타 시·도	특성화 비용	지자체의 여건 등 고려, 시·도지사가 별도로 정하는 비용	시·도 지사 자체 정함	

[※]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에 가입한 시설은 상해보험료 수납 불가

<표7> 2019년 보육료 수납액

예시 2019년 보육료 수납액

(단위 : 원)

유형	지원구분	연령	성무시:	크모육됴	부모부담보육료		
" 6	7421E		종일반	맞춤반	121027		
		만0세	<u>454,000</u>	<u>354,000</u>	0		
		만1세	400,000	<u>311,000</u>	0		
	만0~5세 보육료・	만2세	331,000	258,000	0		
정부지원	다문화 보육료	만3세	220,000	-	0		
어린이집		만4세	220,000	-	0		
		만5세	220,000	-	0		
	장애이보육료	구분없음	462,000	_	0		
	누리(3~5세장애아)보육료	만3~5세	462,000	_	0		
		만0세	454,000	<u>354,000</u>	0		
	만0~5세 보육료· 다문화 보육료	만1세	400,000	<u>311,000</u>	0		
		만2세	331,000	258,000	0		
정부미지원		만3세	220,000	_	시·도지사가 정한 수납한도액		
어린이집		만4세	220,000	-	내에서 어린이집이 결정한		
		만5세	220,000	_	보육료 수납액과의 차액		
	장애이보육료	구분없음	462,000	_	0		
	누리(3~5세장애아)보육료	만3~5세	462,000	_	0		

^{**} 정부미지원어린이집 유이번(만3세 이상) 아동은 시·도지사가 정한 수납 한도내에서 해당 어린이집 보육료 수납액과 정부지원보육료의 차액 만큼을 부모가 부담. 단, 영어(만0~2세어)는 차액부담이 없으며, 유어(만3세 이상)의 경우라도 법정저소득층과 장애아동은 부모부담 없음

3. 보육비용 산출 선행연구

<표8>과 같이 김동훈 외(2016)의 연령별 보육비용과 정부지원 보육료를 살펴보면 다양하게 산출한 연구가 많고 규모별로 비용이 다른 점을 발견할 수 있다. 2019년 정부지원 보육료는 전년(2018년)과 대비하여 부모보육료는 3.0%, 기본보육료는 10.9% 인상되었지만 연구자들의 평균 보육비용과 2019년 정부지원 보육료와의 차액을 비교해보면 만3세의 경우 최고 월 168,291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8> 선행연구 및 정부지원 단가와의 표준 보육료 비교(97인) (단위 : 원)

		보육비용 선행	연구 결과				
구분	서문희 외 (2013b)	서문희 외 (2014) (국공립·법인)	양미선 외(2015)	김동훈 외 (2016)	평 균 (a)	2019년 정부지원 보육료(b)	보육비용 차액 (a)-(b)
만0세	879,761	1,006,800	964,840	943,400	948,700	939,000	9,700
만1세	614,687	700,900	665,270	654,900	658,939	664,000	-5,061
만2세	488,475	558,900	524,960	518,700	522,758	510,000	12,758
만3세	371,094	419,200	384,770	378,100	388,291	220,000	168,291
만4-5세	331,999	371,200	340,071	336,000	344,817	220,000	124,817

출처 : 김동훈 외(2016). 이용시간을 고려한 보육비용 산출연구. 2016. (재구성)

또한 육아정책연구소(2017)는 보육비용이란 일정 수준의 보육 활동을 제공하는데 소요되는 총비용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2013년 보건복지부 정책연구의 산출 모형을 최대한 준용하여 보육비용 구성 항목은 선행연구와 2016년 기준의 재무회계규칙 관·항·목을 반영하여 인건비, 관리운영비, 급간식비, 교재교구비, 시설비로 설정하여 다음과 같이 보육비용을 산출하였다.

첫째 보육비용 구성 요소의 세부 항목은 2013년 '표준보육비용 산정 연구'를 기준으로 설정하고 1~4차 년도 과제의 세부 항목을 검토하여 지속적으로 산출되었던 관리운영비의 세부 항목(기관운영비, 직책급)을 추가하여 구성하였다. 둘째 보육비용 산출은 영유아 연령을 교사 1인당 영유아 비율의 차이로 반영하였다. 셋째 보육비용 산출의 기준이 되는 어린이집 규모는 기존 선행연구를 준용하여 20인, 50인, 77인, 97인, 124인, 142인, 169인을 기준으로 구성하였다. 넷째 인건비 산출을 위해 어린이집 인력배치는 규모에 따라 영유아보육법과 보육사업안내의 기준을 준용하여 구성하였다. 다섯째 어린이집 교직원 급여는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원장 15호봉, 담임교사 5호봉, 간호사, 영양사, 조리사 1호봉을 1안으로 책정하고, 2안은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의 국·공립 평균 결과에 따라 설정하였다.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도출된 어린이집 보육비용은 <표9>와 같다.

<표9> 보육비용 산출결과

구 분	보 육 비 용 산 출 결 과
	■2015년 연구 결과를 기준으로 연령별 1인당 1일 급간식비에 지난 2년간의 물가상승률을
급간식비	적용하여 산출
	■0세 31,500원, 1-2세 39,400원, 3-5세 56,300원
교 재	■2015년 연구 결과를 기준으로 2015-2017년 기간 동안의 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산출
교구비	■0세 46,700원, 1세 42,300원, 2세 30,900원, 3세 40,800원, 4-5세 35,100원
	■2016년 어린이집 결산자료의 목 수준에서 여비, 수용비·수수료 등, 연료비, 업무추진비,
관 리	직책급, 회의비를 합산하여 영유아 1인당 월평균 지출액 산출
운영비	■20인 66,800원, 50인 47,100원, 77인 42,400원, 97인 39,100원, 124인 37,200원, 142인
	36,400원, 169인 34,400원
	■건축비, 놀이터 설치비, 자산 취득비, 시설장비 유지비로 구성하여 건축비와 놀이터 설
	치비는 기존 선행연구의 산출결과를 활용하고 자산 취득비와 시설장비 유지비는 어린이
시설비	집 세출결산 자료를 기준
	■20인 20,100원, 50인 23,800원, 77인 23,700원, 97인 23,700원, 124인 23,100원, 142인
	23,200원, 169인 23,100원
	■1안 : 인건비 기준을 전체 어린이집 평균을 적용하여 산출(97인 규모 어린이집)
보육비용	■0세 987,000원, 1세 691,500원, 2세 551,900원, 3세 407,900원, 4-5세 364,800원
포꼭되중	■2안 : 인건비 기준을 국·공립 어린이집 평균 수준으로 인상하여 적용
	■0세 1,040,600원, 1세 724,100원, 2세 575,500원, 3세 419,400원, 4-5세 373,700원

출처 : 박진아·김금진·윤지연(2017). 표준 보육료와 교육비 산출 연구(V). 육아정책연구소.

표준보육비용 산출의 중요한 기능을 고려할 때 영유아 1인에게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운영시간과 인력배치 등 보육 전반에 걸쳐 표준화된 '표준보육'의 개념 정립이 필요하다.

현재의 보육비용 산정 방식은 영유아 1인당 비용 산정에 초점이 맞춰있어 보육료 지원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측면에서는 타당한 방식이나 재정 확보를 위한 단가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활용 목적에 따른 산정 방식 개편이 요구된다.

4. 기타 문헌연구

나라에서는 어린이집의 문 열고 닫는 시간부터 시작하고 모든 운영에 간섭을 하지만 그것에 비해지원이 미비해요. 보육료로 들어오는 1원까지도 공개하고 보고하지만 정작 어린이집을 위해 나라에서 협력해주는 것은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어린이집 개원과 동시에 나라의 간섭을 받는데 나라에서 정한 대체공휴일이나 임시공휴일, 선거일, 근로자의 날 등에도 항상 어린이집 나오길 희망하는 아이가 있으면 어린이집 문을 열라고 공문이 내려와요. 어린이집이 나라에서 관리하고 비영리를 추구한다면 적어도 적정한 비용도 지원이 주는 것이 마지 있으면 이 있지 않는데 보다 되었다. 맞지 않을까요? 아이들에게 받는 보육료로 솔직히 냉장고 하나 살려고 하면 허리가 휘어요.

휴일에도 문을 열으라고 공문이 내려오면, 나라에서 그 아이의 휴일보육료는 지원해주는데, 말은 보육료의 150%를 지원해 준다고 하지만 전체보육료가 아닌 하루 보육료의 150%다_보니 2017년 기 준으로 하루 만1세 24,650원, 만2세 20,410원인데 교사들이 한 시간도 아니고 하루 종일 2만원 정 도의 급여를 받고 일하지 않으려고 해요. 한 마디로 손해 보며 일해야 하는 어린이집입장이지만 나라에서는 전혀 이를 신경 쓰지 않는 것 같

아요. 적어도 현실에 맞게 지원이 나오고 문열어라 열지 말라를 결정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남는 것도 없고 오히려 마이너스인데 사업체의 장으로서 계속 문을 열어야 할지 정말 고민스러워요 (이정화, 2017).

2012년도 표준보육료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보육료가 지급되는데, 정부에서는 모든 요구와 조건을 어린이집에서 어떻게든 맞추라고 이야기하니 원장들은 급여도 최저임금으로 줄여가며 교재교구에 드는 비용과 각종 공사비용을 줄여가며 어린이 집을 예산에 맞게 운영해 가고 있다(이정화, 2017).

Ⅳ. 충청남도 민간어린이집 보육료 실태분석

1. 충남 민간어린이집은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가?

높일 수 있다. 국가와 지자체의 무상보육정책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수요자와 공급 자가 공감하는 실질적인 보육료 지원정책이 시행되어야 한다. 유명무실한 법규는 국민에 대한 정체성 혼란과 보육행정의 일관성을 훼손하며 존재가치가 없기 때문 이다.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무상보육료 지원으로 민간어린이집의 정상적인 운영을 통한 부모와 어린이가 행복한 양질의 보육서비스가 가능한 상황인지 여부를 다음 과 같이 심도 있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1)보육서비스 품질향상의 기본요건과 비용항목

- ①쾌적하고 안전한 기관1)환경 기관 설치 유지비
- ②우수한 교사와 성실한 직원 인건비
- ③위생과 영양을 갖춘 급간식 제공 급간식비
- ④창의 융복합형 인재양성 교육프로그램 교재교구비
- ⑤사무, 행정, 회계, 차량, 기관 등 유지관리 관리운영비

¹⁾ 영유아보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2)보육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한 적정보육료의 보장

민간어린이집이 우수한 보육서비스 품질이 보장되는 보육기관으로써 그 기능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기관 시설비, 인건비, 급간식비, 교재교구비, 관리운영비 등필수지출 항목에 따른 제반비용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적정보육비용의 수납이요구된다.

2. 충남 민간어린이집은 적정보육료를 보장하고 있는가?

<표10>에서와 같이 2013년 정부가 조사 발표한 표준보육비용 3가지(상·중·하) 영역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하)과 비교해 보면 6년이 지난 2019년도 충남 민간보육료 수납한도액은 영아(0세~2세)는 모두 표준보육비용 수준을 5.7%~13% 이상 초과하고 있지만 유아(3~5세)는 82.%~87.7% 수준으로써 6년 전의 표준보육비용에도 크게 못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10> 2019년 보육료 수납한도액 분석

구 분	2019년 수납한도액	표준보육비 대비 과부족율	2013년 표준보육비(하)	표준보육비 대비 과부족액
0세	939,000	113.06 %	830,500	+ 108,500
1세	664,000	110.98 %	598,300	+ 65,700
 2세	510,000	105.72 %	482,400	+ 27,600
3세	301,450	82.25 %	366,500	- 65,050
4~5세	288,260	87.69 %	328,700	- 40,440

3. 낮은 보육료 수납은 보육서비스의 저품질 가속화

2013년 정부가 발표한 표준보육비용 중에서 가장 낮은 "하" 수준의 보육료도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 충청남도의 민간어린이집 유아반 보육료 정책은 충남 민간어린이집의 정상운영 및 양질보육의 여건을 외면하고 보육 서비스의 저품질을 가속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올바른 정책이라 할 수 없다. 민간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질을 유지하고 개선하기 위해서는 적정보육비용 이상의 보육료 수납을 보장하는합리적인 보육료 정책이 필요하다.

"낮은 보육료로 어떻게 양질보육이 가능한지? 그 방법을 제시하라!"고 주장하는 보육현장의 목소리에 관련 기관은 적극적인 정책수용이 요구된다.

4. 최저임금 인상율에 못 미치는 보육료의 낮은 인상율

< 표11>에서와 같이 2014년부터 2019년까지 6년간의 최저임금 총 인상율은 57% 증가하였으나 보육료 인상율은 13.7%에 그치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급상승한 최저임금 인상율을 전혀 반영하지 않는 충남 민간보육료 수납한도액은 보육현장의 실태를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위와 같이 낮은 보육료 인상률은 민간 어린이집의 운영부실과 폐원 등의 중요한 원인으로써 정당한 이유와 논리적 사고로는 이해하기 어려워 보이며 합리성과 객 관성이 결여된 과도한 행정 간섭이 될 수 있다.

특히 최근 2년간 36%의 최저임금 인상율 대비 충남 민간보육료 수납한도액 인상율은 5.5%에 불과하기 때문에 보육기관 운영자는 원가미만의 낮은 보육료에 대한불안과 최소한의 운영조차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을 토로하고 있는 실정이다.

<표11>최저임금 상승률 대비 보육료 인상률

(단위: %)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6년간 합계
최저임금 인상률	7.2	7.1	8.1	7.3	16.4	10.9	57.0*
충남민간보육 료 인상률	2.0	3.0	1.5	1.0	4.7	1.5	13.7
인상률 차이	5.2	4.1	7.6	6.3	11.7	9.4	43.3

^{*}퇴직금과 4대 보험료 인상률을 합하면 실질 인건비 인상률은 68%가 되며, 실질 임금인상률 68% 대비 보육료 인상률 13.7%와의 차이는 54.3%임.

Ⅴ. 충남 민간어린이집 보육료 현실화 방안

1. 보육료 현실화에 대한 인식전환

민간어린이집은 공인받은 보육기관으로써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책무를 지고 있기 때문에 그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데 필요한 적정 보육비용을 수납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런데 현재 영유아보육법 제38조에 따라 민간어린이집의 운영자는 적정보육비용을 자의적으로 결정해서 수납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관할 시·도지시가 결정 고시하는 범위 내에서 재원 아동의 보호자로부터 보육비용을 수납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시·도지사는 양질보육의 제공이 가능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영에 필요한 제반비용을 충당할 수준의 적정 보육료를 합리적이고객관적이며 공정 타당한 기준을 마련하여 적정보육비용을 결정 고시해야 할 책임이 있다.

2. 표준보육비용 미만의 낮은 보육료 정책 개선

지난 6년간 충청남도가 고시한 민간어린이집의 보육료 수납한도액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며 타당한 기준인 2013년 정부가 발표한 표준보육비용 기준에 크게 못미치는 낮은 보육료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 원인과 배경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제기된다.

첫째, 적정보육비용을 통한 양질보육 여건조성에 대한 책임의식의 결여이다.

표준보육비용 즉 적정보육원가에 미달하는 저가보육료 수입으로는 정상적인 기관 운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교직원 처우, 급.간식, 교재교구, 기관 환경 개선 등에 문제가 발생하게 됨으로써 보육서비스 질의 하락을 초래하게 된다는 필 연성에 대한 공감과 인식이 부족하다. 충청남도는 민간어린이집이 양질의 보육기 관으로서 정상적인 운영에 필요한 적정보육비용을 보장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육 료 수납한도액을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민간어린이집 보육료 현실화의 해결책이 충청남도가 아니라 중앙정부의 책임으로 회피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문제는 충청남도만의 문제라기보다는 전국의 다른 시·도들도 직면한 공통적인 현상이다. 따라서 중앙정부에만 책임을 전가시키기보 다는 지방자치의 소신과 원가회계 방식을 과감하게 도입하여 충청남도가 주체적으 로 앞장서는 선진 보육행정이 필요하다.

둘째, 보육료 수납한도액 결정시스템의 불합리성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보육료 결정시스템이 가장 합리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보육서비스 생산자인 기관운영자, 소비자인 학부모, 공정한 중재자인 공무원·전문가 등 세 그룹이 공정하게 참여하는 보육료 결정시스템이 가동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행 충남보육정책위원회 위원 15명 중에 민간어린이집 운영자는 단 한명이 포함되어 있으며, 보육료수납한도액 결정을 심의할 때에는 제척사유에 해당되어 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는실정이다. 합리적인 위원회의 기능 개선이 요구된다.

셋째, 보육료 결정을 위한 심의자료 공개가 필요하다. 매년 개최되는 충청남도 보육정책위원회의 보육료 수납한도액 심의를 위한 회의자료가 당사자는 물론 학부모등에게 공개되지 않고 있다.

보육료 수납한도액 심의의 객관성, 공정성, 합리성 등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넷째, 적정보육료 산정을 외면한 낮은 보육료 정책의 시·도간 담합 또는 지역별 하향식 비교분석의 문제점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

지역의 특수성과 현황 등을 감안한 민간보육료 수납한도액을 산정하여야 하나 원

가회계학적 관점 및 급격하게 인상된 최저임금 상승률 등 실질적인 운영현실을 미반 영한 타 시·도의 낮은 보육료 및 인상율을 근거로 결정된 보육료는 민간 보육기관의 재정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

다섯째, 학부모의 욕구와 부담능력을 외면한 낮은 보육료 정책의 문제 해결이 요 구된다.

학부모들의 보육 서비스에 대한 욕구는 환경이 좋은 기관과 훌륭한 보육교사의 보살핌, 양질의 급·간식 제공, 안전하고 즐거운 보육의 보장이다. 이러한 보육 서비스가 제공된다면 적정보육비용에 대한 부담과 지출은 당연히 수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학부모의 비용부담과 물가상승율 억제라는 측면만을 지나치게 강조한다면 건전한 보육발전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3. 표준보육비용 이상의 보육료현실화 방안 및 의식의 변화 필요성

첫째, <표12>에서와 같이 2013년 3월 누리보육료 정부지원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2016년에 30만원 지원을 약속하였으나 문재인 정부 2년차에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누리보육료 완전무상 지원보다 <표13>과 같이 아동수당을 신설하였다.

<표12> 중앙정부의 누리보육료 지원 계획

시행 약속년도	2013년	2014년도	2015년	2016년
누리보육료 지원금	22만원	24만원	27만원	30만원

<표13> 아동수당(0세~만5세) 대비 누리보육료 현실화 예산 비교

사립유치원(3~5세아)	504,000명	2019년 아동수당지급대상
민간,가정어린이집(3~5세아)	377,000명	2013년 이승구 6시합에 6
소 계	881,000명	약 251만명
사립유치원,어린이집	1 7 5700 0	0.7 1000lol
누리보육료 10만원 인상시	1조 572억원	3조 120억원
예산액	=88.1만명×10만원×12월	= 251만명×10만원×12월
예간 액		

둘째, 완전한 무상보육 실천을 위한 표준보육비용 금액의 누리보육료 지원 의무화입법 추진이 필요하다.

2019년 4월 김세연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다. 그 내용은, "정부는 표준보육비용의 조사 후 즉시 공표해야 하고, 정부의 보육료 지원금액 및 시.도지사의 보육료 수납한도액은 표준보육비용 이상

으로 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법률개정안이 신속하게 처리되어 무상보육 료 전액이 중앙정부 예산으로 편성되어야 한다.

개정 법률안이 통과되기 이전이라도 현행 영유아보육법 제 34조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는 무상보육료를 표준보육비용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표준보 육비용과 중앙정부 지원액과의 차액은 지자체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보육료 현실화의 중요성에 대한 관련 기관의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

정부와 지자체는 표준보육비용 수준까지 보육료를 무상 지원하고 시·도지사가 결정 하는 보육료 수납한도액은 표준보육비용 수준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넷째, 무상보육료 지원예산 부족 시 수익자 부담 원칙의 적용이 요구된다.

영유아보육법의 목적적 개념은 "영유아의 심신 보호, 건전한 교육제공,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이다. 보육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적정보육비용의 부담은 필수 사항이다. 만일 정부와 지자체가 양질보육을 위한 적정보육비용을 100% 부담하지 못한다면 그 비용의 차액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영유아의 보호자가 부담해야 할 것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표준보육비용 수준의 완전한 무상보육료 지원도 하지 않으면서 표준보육비용과의 차액을 학부모에게 부담시키는 것에 대해서도 매우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현실이다.

다섯째, 소득수준에 따른 지역별 상한액 차등적용이 필요하다. 영유아보육법 제38 조는 민간어린집의 설치 운영자가 영유아의 부모로부터 수납할 수 있는 보육료를 시·도지사가 정함에 있어서 필요시에는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그 기준을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군 지역별 지역환경과 소득수준 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으로의 혁신적인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4. 충청남도는 교육예산보다 보육예산 우선지원이 필요하다.

급속하게 진행되는 저출산 및 고령화 등 인구감소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출산장려 정책관련 예산지출의 우선순서는 임신, 출산, 육아 및 보육, 교육비 등으로 추진되 어야 한다.

또한 유치원과 초·중등학교의 교육비 예산지원은 특수목적세인 교육세를 수입원으로 하는 지방재정 교부금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의 보육예산은 항상 부족한 형편이다. 최근 수년간 보육분야 예산편성 추세를 보면 중앙정부가 무상보육 예산을 충분하게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방정부의 보조금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표14>에서와 같이 2019년 충청남도는 전국 최초로 법적 의무가 전혀 없는 고교 1~2학년 무상교육비 441억 원을 전액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전국 최초로 아기수당 226억 원을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다.

2020년에는 충남교육청이 전국최초로 사립유치원 만5세아 부모 부담교육비 보조 금 월 20만원 중에서 8~10만원을 충청남도 도비예산으로 지원하는 계획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공립어린이집을 제외한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자 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충청남도 기초자치단체는 충청남도의 기초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충청남도는 인가와 더불어 시·군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적정보육료를 지원해야 할 것이다. 즉, 충청남도 도민에 대한 사립유치원 및 고교무상교육비 지원도 중요하지만 충청남도가 예산부족을 이유로 보육료 현실화를 미루는 것은 효과성이 낮으며, 행정기관의 정책결정 의지가 보육료 현실화에 영향을 끼친다고 할 수 있다. 영유아보육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어린이집 설치·운영자 및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지만 제36조의 규정에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사의 인건비, 초과보육(超過保育)에 드는 비용 등 운영경비, 보육교직원의 복지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여야 한다. 충청남도 보육관련 행정기관은 보육기관의 인가와 더불어 운영 및 지원에 각별한 관심이 요구된다.

<표14> 충청남도 무상교육 및 양육비 도비지원 현황

구 분	2019년 집행	2020년 예정	비고
유치원 급식비지원 (1인당 월 31,166원)	50.73억원	계속 유지	어린이집 미지원
고교 무상교육비(1,2학년)	441.39억원	계속 유지	전국 최초
친환경식재료현물(유초중고) (유치원 1일 280원, 220일)	229.80억원	계속 유지	전국 최상위
사립유치원 5세, 무상교육비	0	1인당 8~10만원	전국 최초
충남아기수당(12개월 미만) (1인당 매월, 10만원)	226.00억원	계속유지	전국 최초

출처 : 충청남도 의회 내부자료. 2019.

V. 결론

충청남도 민간 어린이집 보육료 현실화의 최종 목표는 어린이들에게 최적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으며, 목표달성을 위해 정부는 보육교직원과 학부모가 공 감하는 보육료 기준을 제도화하고 다음과 같은 방안이 필요하다.

첫째, 충청남도 보육기관 영유아 현원의 53%를 보육하고 있는 민간어린이집의 보육 서비스 고품질화를 위해 <표15>에서와 같이 보육료 지원 보조금과 수납 한도액의 현실화가 필요하다.

<표15> 보육료 현실화의 개념분석과 정책방안

구 분	법적 근거	보육비용 지원 현황	개선방안
보육료 지원 금액의	영유아보육법	표준보육비용 81~86%	• 정부, 지자체의 우선적인
현실화	제34조, 제36조	수준지원	예산확보 및 지원
보육료 수납	영유아보육법	표준보육비용 82~87%	• 지자체의 고품질 보육
한도액의현실화	제38조	수준결정	서비스 실현

둘째, 영유아의 양육과 스트레스 불안감은 안심보육 및 보육 서비스의 고품질화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음으로 안심보육과 양질보육을 위한 보육료 수납한도액의 현실화 및 그에 따른 지원 보조금의 적정화가 필요하다.

셋째, 표준보육비용의 공표를 의무화하고 보육료 산정에 객관성과 합리적인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보육의 질이 개선될 수 있으려면 보육비를 적정수준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표준보육비용의 산출 결과를 공표하고, 표준보육비용 단가를 적용시킨 보육료가 책정되어야 한다. 또한, 보육의 공공성 강화,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 부모 양육지원 확대를 위한 정책이 조화롭게 마련되어야 한다(베이비타임즈 http://www.babytimes.co.kr)

따라서 영유아 1인당 보육비용을 표준보육비용 이상으로 보육료를 책정하도록 명 문화 시켜서 보육의 질적 하락평준화를 방지해야 한다.

넷째, 김종필(2016)이 제시한 바와 같이 현행 12시간 운영원칙에서 보육교사의 일 근무 8시간을 표준보육시간으로 정하고, 나머지 4시간은 종일반 교사가 담당하는 2교대 근무제 도입과 이에 따른 인력지원과 추가비용을 정부가 부담하는 표준보육시간 운영제 도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다섯째, 무상보육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 중 보육료는 표 준보육비용보다 낮게 결정할 수 없도록 제도적 조치가 필요하다.

여섯째, 시·도지사가 상한을 결정하는 이용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필요경비 또한

표준보육비용 단가범위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보육기관의 운영비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보육교사 인건비를 국가에서 전액 부담하는 국가책임보육이 실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보육교사의 직무 만족 도와 전문성 확보, 고용 안정성 등을 강화하기 위해 보육교직원 경력 수준을 반영 한 처우개선 제도가 정착되어야 한다.

여덟째, 4대 보험료 및 퇴직적립금 지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 일부를 보전하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이 요구된다.

2019년 보육기관이 정상적인 운영을 하려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보전을 위한 영유아 0~2세 보육료 2,472억원의 증액이 필요하며, 현행 보육료 6.3%의 인상으로는 10.9%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을 감당할 수가 없다. 실제 50인 미만 어린이집 가운데 평균치에 가까운 기관을 선별, 최저임금 및 보육료 인상 전후 해당시설의 월계표('18년 12월, '19년 1월)를 분석한 결과인건비 인상분이 보육료 인상분보다 1백만원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베이비타임즈). 보육기관의 운영비는 영유아의 보육서비스에 필요한 품질향상과 보육교직원의 안정적인 처우개선이 대부분 차지한다. 처우의 사전적 의미는 "조처(措處)하여 대우"하는 것을 말하며, 한자어의 처우(處遇)는 근로자에게 어떤 수준의 지위나 봉급 등을 주어 대접(待接)하는 일이라고 되어 있다(네이버 사전). 여기서 대접이란 근로자인 보육교직원을 마땅한 예(禮)로 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우리나라 보육사업의 50%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민간보육기관이 정상적인 운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보육료 현실화 노력이 필요하다.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따라 보육사업은 사회복지사업으로써 현재의 보육료는 완전한 시장원리에 따를 수 없기 때문에 국가의 통제와 간섭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보육서비스가 공동체 전체의 공공재원으로 발전시켜야 할 준 공공서비스이고 사적 서비스가 아닌 권장재적 준 공공서비스 영역이기 때문에 현실감 없는 보육료 결정 은 보육의 프로그램이나 급·간식의 품질저하와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영유아시기에 많은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충청남도는 민간보육기관이 오직 영유아의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에 전적으로 힘써 나아갈 수 있도록 선제적이고 대담(大膽)한 보육료 현실화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 김동훈 외(2016). 이용시간을 고려한 보육비용 산출연구.
- 김종필(2016). 실질적인 보육의 질 개선방향 : 처우개선 및 운영시간개편을 중심으로. 한국어린이집 총연합회 정책연구소.
- 박진아·김금진·윤지연(2017). 표준 보육료와 교육비 산출 연구(V). 육아정책연구소.
- 서문희·양미선·박진아·유영준·이영미·유옥수·정승구·이세원·이혜민(2013a). 표준보육 비용 산정 연구.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 서문희·양미선·이영미·박형진·김희정(2013b). 보육의 질 제고를 위한 보육비 산출 연구. 육아정책 연구소.
- 서문희·양미선·이동하(2014). 어린이집 설립 주체에 따른 보육비용 산출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 양미선·박원순·피재은·이동하(2015). 지역특성을 고려한 보육비용 산출연구. 육아정책연구소
- 이정화(2017). 어린이집을 개원하면서 느끼는 원장의 어려움과 요구. 배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경기도형 보육정책 대 토론회(2016). 경기도의회.
- 보건복지부(2019). 보육사업 안내.
- 네이버 사전 https://www.naver.com/
- 베이비타임즈 http://www.babytimes.co.kr

<참고자료>

1) 영유아보육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영유아(嬰幼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8. 4.>

[전문개정 2007. 10. 17.]

제34조(무상보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을 무상으로 하되, 그 내용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 및「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의 무상보육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상의 여건과특성을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거나 보조하여야 한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 표준보육비용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3항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을 정할 수 있다.
-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 ⑥ 제12조 후단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무상보육을 받으려는 영유아와 장애아 및 다문화가족의 자녀를 보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어린이집을 설치 · 운영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3. 1. 23.]

제38조(보육료 등의 수납)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집을 설치 · 운영하는 자는 그 어린이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 도지사가 정하는 범위에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시 · 도지사는 필요시 어린이집 유형과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그 기준을 다르게 정할수 있다. <개정 2011. 6. 7.> [전문개정 2007. 10. 17.]

2) 영유아보육법 일부 개정법률 안

영유아보육법 일부 개정법률 안 (김세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9710 발의연월일: 2019. 4. 9.

발 의 자 : 김세연.박명재.유승민 김석기

.김선동.김상훈 곽대훈.박완수.성일종 조경태.임이자.정진석 김규환.정태옥. 이철규 김광수.이명수 의원(17인)

제안이유

현재의 무상보육은 올바른 보육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예산인 <u>표준보</u> 육비용과 정부 보육료 지원 단가라는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그야말 로 무상보육의 구색만 갖춰놓고 보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는 실정 임.

이에 정부가 조사한 표준보육비용 등을 공표하게 함으로써 올바른 보육서비스 제공에 필요로 하는 보육비용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보육비 등이 표준보육비용보다 낮게 책정되지 못하도록 법률로 명시하여 국가적으로 보육의 질이 하향평준화하는 우려를 차단하고 자 함.

주요내용

표준보육비용의 공표를 의무화하고(안 제34조제7항), 무상보육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 중 보육료는 표준보육비용보다 낮게 정할 수 없도록 하며(안 제34조제4항), 시·도지사가 상한을 정하는 이용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경비 또한 표준보육비용 단가범위를 적용하도록 함(안 제38조).

영유아보육법 일부 개정법률 안 (임이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9806

발의연월일 : 2019. 4. 15.

발 의 자 : 임이자.장석춘.김용태

윤종필.원유철.문진국 유민봉.박인숙.김승희 최교일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어린이집 표준보육비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무상보육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u>무상보육 시행을 위해 지원하는 비용이 물가상승률이나 최</u> <u>저임금 상승률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표준보육비용보다도 적은 비용</u> 으로 지원되고 있어 부족한 보육비용으로

인해 어린이집 보육의 질이 저하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을 표준보육비용 이상의 금액으로 정하고, 여기에 물가상승률이나 최저임금 상승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반영하여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34조제4항 및 제7항).

보육료 현실화를 위한 대책방안 모색 *의정토론회*

지정토론

민간어린이집 운영난 해소를 위한 보육료 현실화	27
박정예(아산 새싹어린이집 원장)	
충남 민간보육료 현실화 방안 제시 ···································	37
충남 민간 어린이집 보육료 현실화, 우리가 해야 할 책무입니다 … 장희선(어린이집 학부모 대표)	55
보육료의 현실화 ···································	59
충청남도의 보육정책 현황 ···································	63

민간어린이집 운영난 해소를 위한 보육료 현실화

박 정 예 아산 새싹어린이집 원장

작금의 대한민국은 저출생 고령화 문제로 인하여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 실정임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대한민국 2018년 합계 출산율, 즉 여성 한명이 가임기간(15~49세) 동안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수가 0.98명으로 통계작성을 시작한 1970년 이래로 최저를 기록하고 있어 세계 역사상유례가 없는 기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대한민국은 1993년 OECD 회원국 가입을 위하여 촉발된 보육시설 신고제를 통하여 수많은 보육 시설을 설립하기에 이르렀고, 그 결과 보육 수요를 웬만큼 충족시키는 기능을 할 수 있었기에 근 20년 가까이 대한민국 아동 보육에 이바지하고 있다. 그러나

2008년 1.19명이던 합계출산율이 2012년 1.30명을 정점으로 하락하기 시작하여 2017년 1.05명으로 집계되더니 2018년에는 1명 이하로 내려가 인구 구조학적인 면에서 연쇄적인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정부는 지난 10년 간 약 150조원의 보육예산을 쏟아 부었으나 결과는 미미한 채로 답보상태에 놓여있고, 저출생의 여파로 인한 아동 감소 현상에 따라 보육시설 및 초등학교의 시설 자연 감소 등 역기능적인 사회구조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에 따라서 어린이집은 정원 미충족 상태가 발생하게 되었고, 매년 인상되는 최저임금(인건비)이 감당할 수 없는 부담으로 다가오는 현실에 부딪히게 되었다. 2012년도에 대통령의 누리과정 지원비 30만원 순차적 인상 공약에 기대를 걸고 있었으나 지금까지도 22만원에서 7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고, 보육료는 물가인상 및 표준보육비용 산출내역조차 외면한 채 거의 변화가 없는 현실 앞에서 점점 보육시설 운영난이 가중되는 난감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다.

2019년 4월 현재 충남도내 전체 어린이집 1,856개소에 재원하고 있는 영유아 61,369명 중 32,484명(53%)의 영유아가 민간어린이집(607개소)에 재원하고 있기에 충남 보육서비스의 수준은 민간어린이집의 서비스 수준이 잣대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위치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충청남도에서는 복지예산을 확충하여 분야별로 제도적 개선을 꾀하고 있으나 기존 영유아를 위한 양질보육을 할 수 있도록 보육시설을 지원하는 것과 현실에 맞는 보육료 책정에 대한 정책이 적극적으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되며, 그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이와 관련한 내용을 언급한 발제자의 논리와 주장에 대해 적극 공감하면서 본 발표자는 다음과 같이 사립민간어린이집 운영 사례 중 회계내역(수입과 지출)을 통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도록 함으로써 어린이집이 양질보육과 역할을 수행하는 전인적인 보육기관으로 정립되도록 하고자 한다.

1.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금액 현실화의 시급성

- 1) 다음에 소개할 민간 어린이집 운영난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국가는 반드시 적정 보육비용을 제시하고 예산을 확보하여 이를 정상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다. 양질보육이란 보육관련 당사자 모두가 만족할 만한 수준의 보육활동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이며, 적정보육비용이란 양질의 보육서비스가 정상적이고 지속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민간보육시설에 소요되는 필수적인 비용을 말한다.
- 2) 누리과정 보육료는 박근혜 전 대통령 공약사항이기도 할 뿐 만아니라 물가인 상 및 최저임금 상승과 연동하여 시급하게 현실화되어야 한다. 7년째 22만원으로 동결된 상태임을 다시 한 번 언급하는 바이다.

2. 누리과정 보육료 수납한도액 현실화의 필요성

- 1) 매년 최저임금 인상과 그에 따른 인건비 인상 그리고 물가 인상 등 사회적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는데, 보육료 수납한도액은 변동이 없다면 누가 봐도 보육기관의 정상적인 운영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 2) 양질의 보육을 위해서라도 지자체 장은 매년 합리적인 금액을 결정하여 고시할 책임이 있다

3. 안심보육, 양질보육의 전제조건은 보육료 현실화

- 1) 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양질 보육을 제공하기 위한 기본적인 요소를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는 발제자의 의견에 동의한다.
 - ①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환경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시설비용.
 - ② 우수하고 성실한 교직원 확보에 소요되는 인건비.
 - ③ 안전위생과 고른 영양을 갖춘 급간식 제공을 위한 경비.
 - ④ 창의적이고 전인적인 미래인재 양성에 적합한 교재교구 구입비용.
 - ⑤ 사무 및 행정, 회계, 차량관리 등에 소요되는 관리운영비.
- 2) 이의 실현을 위해 정부에서 발표하는 표준보육비용 즉 공신력 있는 국책연구 기관의 조사자료인 표준보육비용이 가장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이기에 이를 기준으로 삼아 정책을 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본다.

4. 운영난에 처한 민간어린이집 실상

1) 민간어린이집 재무회계 보고서 실례①

(00 어린이집, 2019년 4월말 기준)

현원(정원)	35(42) 충족률 83.3%	원장포함 교직원(교사)	10명(7명)		
반 구성	7개 반(1세 3반 12명, 2세 4반 23명)				
교직원 구성	교사(7), 원장(1), 보조교사(1), 주방보조 겸 보육도우미(1)				

수 입		지 출	
항 목	금 액	항 목	금 액
정부지원 보육료	12,413,000	원장 급여수당	692,450
부모부담 보육료	-	교직원 급여수당	14,320,290
특별활동비	1,065,000	기타 인건비	-
기타필요경비	1,134,660	4대 보험료부담금	1,278,240
인건비 보조금	1,844,000	퇴직적립금	1,298,960
기본보육료	7,285,000	수용비 및 수수료	469,550
기타 지원금	228,000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525,480
단기 차입금	-	난방,취사 연료비	
잡수입(급여 반납)	-	차량유지비	228,000
		복리후생비	150,000
		기타운영비(임대료)	706,900
		업무추진비	
		직책보조비(직책급)	
		회의비	
		교직원 연수비	
		교재교구비	78,000
		행사비	
		영유아복리비	192,630
		급식비	2,029,500
		특별활동비 지출	1,265,000
		기타필요경비 지출	1,134,660
		단기차입금상환	-
		적립금	-
		시설개보수비	-
		시설장비유지비	-
		자산취득비	-
		잡지출	-
		예비비	-
합 계	24,169,660	합 계	24,169,660

- * 원장 급여 현황 최악의 상태
- 원장 경력(15년)에, 4월달 급여 69만 원밖에 없음(국공립 원장 15봉의 경우 월급 308만 원에 별도의 직책급이 30 ~ 50만원으로 약 270만 원 정도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 등하원 차량 원장이 직접운행.
- * 제도적으로 교직원 10인 부터 두루누리 지원이 되지 않기에 보조교사(1명)를 추가 채용하여 양질의 보육을 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할 수 없음.
- * 반구성시 2개 반은 정원 미달로 3월 이후 적자 상태임.
- * 필요경비 및 특별활동비는 매월 서너 명 수납이 어렵거나 지연되어 운영의 어려운 요인이 됨.
- * 시설 개보수비 적립을 할 수 없는 상태.

2) 민간어린이집 재무회계 보고서 실례②

(OO 어린이집: 2019년 4월말 기준)

현원(정원)	59(99) 충족률 59.6%	원장포함 교직원(교사)	14명(6명)		
반구성	6개 반(1세 5명, 2세 13명, 3세 13명, 4세 14명, 5세 14명)				
교직원 구성	교사(6), 원장(1), 보조(누리)교사(4), 주방 조리사(1), 보육도우미(1), 시간연장반(1)				

수 약		지 출		
항 목	금 액	항 목	금 액	
정부지원 보육료	18,970,000	원장 급여수당	1,545,150	
부모부담 보육료	2,994,500	교직원 급여수당	10,850,900	
특별활동비	3,340,000	기타 인건비	7,808,000	
기타필요경비	1,470,000	4대 보험료부담금	1,877,120	
인건비 보조금	4,986,000	퇴직적립금	1,624,490	
기본보육료	3,367,760	수용비 및 수수료	933,490	
기타 지원금	2,814,960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581,370	
단기 차입금	_	난방,취사연료비	221,930	
잡수입	-	차량유지비	556,900	
		복리후생비	67,930	

		기타운영비	1,265,360
		업무추진비	-
		직책보조비(직책급)	-
		회의비	-
		교직원 연수비	-
		교재교구비	509,715
		행사비	388,000
		영유아복리비	18,600
		급식비	3,131,825
		특별활동비 지출	4,040,000
		기타필요경비 지출	1,770,000
		단기차입금상환	-
		적립금	-
		시설개보수비	-
		시설장비유지비	-
		자산취득비	752,440
		잡지출	-
		वीम]म]	-
합 계	37,943,220	합 계	37,943,220

- * 어린이집 설립비용 8억 원에 대한 자본금 이자는 고사하고, 은행 차입금 3억 원에 대한 차입 이자도 어렵게 납부하고 있는 상황임.
- * 원장 급여 현황
- 4월 급여 150여 만 원
- 원장 경력은 20년 차로, 국공립 원장 20호봉은 월급 339 만 원에 직책급 50 ~70을 별도로 받는 것과 비교하면, 250 만 원 정도 격차 발생함.
- * 반구성은 4개 반이 정원 미달로 3월 이후 적자 상태임.
- * 필요경비 및 특별활동비는 매월 서너 명 이상 수납이 어렵거나 지연되어 운영에 어려움 초래.
- * 시설 개보수비 적립을 할 수 없는 상태로 타 보육기관과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음.

<참고자료> 2019년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 인건비 고시금액

	8	경	보육	政計	52	24
호봉	보수총액	월지급액	보수총액	월지급액	보수총액	월지급맥
1	24,433,200	2,036,100	22,272,000	1,856,000	20,952,000	1,746,000
2	25,071,600	2,089,300	22,747,200	1,895,600	21,156,000	1,763,000
3	25,867,200	2,155,600	23,222,400	1,935,200	21,360,000	1,780,000
4	26,617,200	2,218,100	23,698,800	1,974,900	21,564,000	1,797,000
5	27,374,400	2,281,200	24,174,000	2,014,500	21,766,800	1,813,900
6	28,636,800	2,386,400	24,889,200	2,074,100	21,970,800	1,830,900
7	29,637,600	2,469,800	25,484,400	2,123,700	22,174,800	1,847,900
8	30,717,600	2,559,800	25,918,800	2,159,900	22,336,800	1,861,400
9	31,578,000	2,631,500	26,445,600	2,203,800	22,582,800	1,881,900
10	32,442,000	2,703,500	27,062,400	2,255,200	22,929,600	1,910,800
11	33,531,600	2,794,300	27,980,400	2,331,700	23,359,200	1,946,600
12	34,479,600	2,873,300	28,810,800	2,400,900	23,686,800	1,973,900
13	35,190,000	2,932,500	29,535,600	2,461,300	24,142,800	2,011,900
14	35,949,600	2,995,800	30,182,400	2,515,200	24,670,800	2,055,900
15	36,956,400	3,079,700	30,828,000	2,569,000	25,191,600	2,099,300
16	37,704,000	3,142,000	31,743,600	2,645,300	25,999,200	2,166,600
17	38,433,600	3,202,800	32,413,200	2,701,100	26,613,600	2,217,800
18	39,243,600	3,270,300	33,084,000	2,757,000	27,254,400	2,271,200
19	40,028,400	3,335,700	33,752,400	2,812,700	27,867,600	2,322,300
20	40,706,400	3,392,200	34,422,000	2,868,500	28,504,800	2,375,400
21	41,871,600	3,489,300	35,515,200	2,959,600	29,526,000	2,460,500
22	42,625,200	3,552,100	36,171,600	3,014,300	30,111,600	2,509,300
23	43,298,400	3,608,200	36,750,000	3,062,500	30,693,600	2,557,800
24	43,970,400	3,664,200	37,405,200	3,117,100	31,250,400	2,604,200
25	44,721,600	3,726,800	38,006,400	3,167,200	31,858,800	2,654,900
26	45,416,400	3,784,700	38,606,400	3,217,200	32,414,400	2,701,200
27	46,060,800	3,838,400	39,127,200	3,260,600	32,826,000	2,735,500
28	46,729,200	3,894,100	39,700,800	3,308,400	33,379,200	2,781,600
29	47,343,600	3,945,300	40,324,800	3,360,400	33,906,000	2,825,500
30	48,016,800	4,001,400	40,869,600	3,405,800	34,456,800	2,871,40

[※] 是與某种;是文材,智智科,每个文化。 犯证机 至德

〈2019년 보육교사 인건비〉

5. 결론 : 재무회계 실상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해석

- 1) 원장 급여부족 문제
- 원장 급여가 없거나 미약함. 하루 12시간을 원에서 근무하면서 차량운행에 주방조리 까지 감당해야 함.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참담한 현실.
- 2) 인건비 지원의 허와 실
 - 정부는 복지제도 개선과 일자리 창출명목으로 보육분야에 다양한 지원체계를 추진하고 있고 그중 보조(누리)교사를 양산하였고, 보육도우미 제도를 운영하 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어린이집 운영 부담으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사대보험과 퇴직금은 어린이집에서 부담해야 하는 현 제도는 개선되어야 함.
- 3) 행정적 규제와 법적 규제
 - 정원 미달 또는 맞춤반 아동 유무 즉 보육료 수입과 무관하게 교직원 급여는 동일하게 제공해야 함.(지원시설과의 차이)
- 교직원 휴게시간 사용(보장)과 관련하여 적정한 대체교사 배치 불균형 문제가 안전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로 인한 예측하지 못할 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잠 재적 요인 내재.
- 4) 어린이집 시설 유지보수 비용 확보의 어려움
 - 운영난으로 인하여 어린이집 시설장비 유지나 시설 개보수 등을 할 수 없는 상태여서 시설이 지속적으로 낙후되어 가는 악순환 상태에 놓이게 됨.
 - 유치원이나 국공립 어린이집과 같이 환경개선비나 유지관리 보수비 같은 명목의 지원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함.

역사상 유래가 없는 대한민국의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는 것과 함께 기존 영유아의 안전과 위생이 보장된 양질보육을 위해 정성을 다하는 보육시설의 중요함이 더욱 더 크게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본 토론자를 비롯한 보육 관계자들은 어린이집 운영을 천 직으로 알고서 보육이 백년지대계라는 굳은 신념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기존 아동에 대한 양질의 보육과 안심보육이 출생율 증가의 단초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작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오늘 토론회에서 제시된 "충남민간가정어린이집의 무상보육료 지원금액의 현실화" 및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료 수납한도액의 현실화"가 실현되도록, 충청남도 도지사님과 보육담당관 그리고 충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김연 위원장님과 여운영 의원님을 비롯한 전체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하면 저희 민간·가정 어린이집 원장들은 부모와 아이들이 행복한 안심보육과 양질보육

제공을 위하여 정성을 다해 더욱 더 신명나게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대 : 대한민국은 저출생 위기에서 시급히 벗어나야 합니다

한 : 한 아이 한 아이가 정말로 귀하고 소중하다고 생각한다면

민 : 민간. 가정 어린이집의 양질보육과 안심보육에 최선을 다하는 것

국 : 국가와 지자체가 최우선으로 실천해야 하는 시급한 숙제입니다.

충남 민간보육료 현실화 방안 제시

장찬우 굿모닝충청 충남취재본부장

들어가며,

2019년 4월 현재 충남도내 전체 어린이집 1,856개소에 재원하고 있는 영유아 61,369명중 53%인 32,484명의 영유아가 민간어린이집(607개소)에 재원하고 있기 때문에, 충남 보육서비스의 수준은 민간어린이집의 서비스 수준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한 관점에서 발제자의 주장과 논리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본 발표자는 충청 남도의 보육, 교육지원 예산현황 및 정책의 기조를 분석하여, 충남도내 민간어린 이집이 양질보육의 제공이라는 민간보육기관으로써 본래 기능과 역할의 수행이 가 능하도록 하기 위한, 보육료 현실화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1. 충남 민간보육료 현실화의 의미

충남도내 민간어린이집이 양질의 보육을 제공할 수 있는 상태로 정상 적인 운영이 가능한 수준의 보육료가 무상지원이 이루어지거나 또는 부모로부터 수납이 가능한 보육료 금액이 결정 고시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즉 하나는, 무상보육료 지원금액의 현실화를 의미하며, 또 하나는 보육료 수납한도액의 현실화를 의미한다.

보육료 현실화의 개념분석과 정책방안

구 분	법적 근거	충남보육비용 지원 현황	개선방안
보육료 지원 금액의	영유아보육법	표준보육비용 81~86%	• 정부, 지자체의 우선적인
현실화	제34조, 제36조	수준지원	예산확보 및 지원
보육료 수납 한도액의	영유아보육법	표준보육비용 82~87%	•지자체장의 합리적 금액으로
현실화	제38조	수준결정	결정 고시할 책임

2. 양질 보육의 제공과 적정보육비용

양질보육이란 부모와 아이, 원장과 교사가 만족할 만한 수준의 보육활동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를 말하며, 적정보육비용이란 양질의 보육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민간보육기관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3, 양질 보육 제공의 기본요소와 비용항목

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양질 보육을 제공하기 위한 기본적인 요소와 그에 따른 비용항목을 아래와 같이 분류하여 설명하고 있는 발제자의 의견에 동의한다.

- 1)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환경의 설치 및 유지보수 (시설비)
- 2) 우수한 교사와 성실한 교직원 (인건비)
- 3) 위생과 영양을 갖춘 급간식 제공 (급간식비)
- 4) 창의 융복합형 인재양성 교육프로그램 (교재교구비)
- 5) 사무, 행정, 회계, 차량, 기관 등 유지관리 (관리운영비)

4. 양질보육을 위한 적정보육료 기준은?

1) 정부발표 표준보육비용

양질보육을 위한 적정보육료 수준은, 시설운영자인 원장, 보육료지원자 인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보육료 실제 부담자인 학부모의 입장에 따라서 각자 다르게 주장할 수 있겠지만, 공신력 있는 국책연구기관의 조사자료인 표준보육비용이 가장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 정책을 펴는 것이 가장합리적이라고 본다.

선행연구 및 정부지원 단가와의 표준 보육료 비교(97인) (단위:원)

		보육비용 선행	연구 결과				
구분	서문희 외 (2013b)	서문희 외 (2014) (국공립·법인)	양미선 외(2015)	김동훈 외 (2016)	평 균 (a)	2019년 정부지원 보육료(b)	보육비용 차액 (a)-(b)
만0세	879,761	1,006,800	964,840	943,400	948,700	939,000	9,700
만1세	614,687	700,900	665,270	654,900	658,939	664,000	-5,061
만2세	488,475	558,900	524,960	518,700	522,758	510,000	12,758
만3세	371,094	419,200	384,770	378,100	388,291	220,000	168,291
만4-5세	331,999	371,200	340,071	336,000	344,817	220,000	124,817

출처 : 김동훈 외(2016). 이용시간을 고려한 보육비용 산출연구. 2016. (재구성)

위 표에서 제시한 여러 연구자들의 평균적인 표준보육비용은 만 3세아 388,000 원, 만 4~ 5세아 344,000원 이상임을 알 수 있다. 현재 보육현장에서 보육료 인상 요구시에 인용하고 있는 가장 낮은 수준의 표준보육비용인 만 3세 366,500원, 만 4~5세 328,700원은 2013년도에 국무총리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육아정책연구소가 조사 발표한 것이다.

2) 2013년 정부발표 표준보육비용과 2019년 충남민간 보육료지원액 및 수납한도 액과 차이 분석

< 2013년 발표, 표준보육비용 대비 충남민간보육료 수준 대비표 > [단위:원]

구 분	0세아	1세아	2세아	3세아	4~5세아
표준보육비용 (1안) (A1)	830,500	598,300	482,400	366,500	328,700
표준보육비용 (2안) (A2)	917,500	655,900	528,200	394,700	353,400
표준보육비용 (3안) (A3)	992,000	718,000	582,100	447,800	403,800
정부지원 보육료	939,000	664,000	510,000	220,000	220,000
(考发以是 坐牙豆)	(0)	(0)	(0)	(77,000)	(64,000)
보육료지원 항기	939,000	664,000	510,000	297,000	284,000
민간 납한도액(B) (표비와 차액비율)	939,000 (113.06%)	664,000 (110.98%)	510,000 (105.72%)	301,450 (82,25%)	288,260 (87.69%)
표준보육비용과 수납한도액 차이 (A1-B)	+108,500	+65,700	-27,600	-65,050	-40,440

위 분석표를 보면, 충남 민간의 유아반 보육료 수납한도액은 7년 전에 발표된 표준보육비용의 약 82% ~ 88%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저가 보육료 수입으로는,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원장의 급여도 제대로 지급받기 어려운 실정일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된다.

〈 2013년 발표, 표준보육비용 산정시 각 안의 항목별 산정기준 〉 (표준보육비용 산정연구: 보건복지부, 육아정책연구소(2013.12) / 50인 어린이집 기준)

구 분	1 안	2 안	3 안
인건비	·전국 어린이집 평균 급여 수준 (원장: 4호봉, 교사: 1호봉)	· 전국 어린이집 평균 호 봉 (원장: 12호봉, 교사 5호 봉)	· 국공립 어린이집 평균 호봉 (원장: 15호봉, 6호봉)
교재 교구비	· 연령 및 흥미영역별 보유 빈도 높은 교재교구 선정	1안과 동일	1안과 동일
급간식비	·일반 식단 적용	1안과 동일	· 유기농 식단 적용
관리 운영비	·어린이집 세출 조사에 따른 회의비, 여비, 수용비, 공 공요금, 연료비 평균	1안과 동일	1안과 동일
시설비	· 아동 1인당 면적 4.29㎡ · 국공립어린이집 지원단가 적용 (1,201,300원/㎡)	1안과 동일	· 아동 1인당 면적 4.29㎡ · 공공청사 표준건축비 적용 (1,670,000원/㎡)

* 1안, 2013년 원장 4호봉: 1,891,160원

* 2만, 2013년 원장 12호봉: 2,466,710원

* 3안, 2013년 원장 15호봉: 2,633,070원

교사 1호봉: 1,434,050원

교사 5호봉: 1,617,060원 교사 6호봉: 1,728,180원

상기 2013년도 표준보육비용 산정기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장 낮은 수준인 1안의 경우에, 3세 366,500원, 4~5세 328,700원을 표준보육비용으로 산정할 때에, 원장 인건비는 당시 4호봉인 189만1천원, 교사 인건비는 당시 1호봉인 143만4천원으로 계상했던 것이다.

다시 말해서, 3세 보육료 36만 6천원, 4 ~5세 보육료로 32만 8천원을 받아야 만이 원장 월급 189만원, 교사 월급 143만원 지급 가능한 금액이라는 뜻이다. 그런데 지금 싯점에서 보육교사 초임 월급이 최소한 175만원 이상을 지급해야 하는데, 보육료는 29만7천원 ~28만 8천원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실제로 원장은 자신의급여를 제대로 지급받기 도 어려운 실정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 참고사항>

총괄 원가방식에 의한 표준교육비용 산정 법제화 필요

가장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표준교육비용 산정은, "공공요금 산정기준" (기획재정부 훈령 제345호)에 명시된 "총괄 원가방식"으로 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며, 표준교육비용 산정 작업의 용역 발주는 기획재정부 지침에 따라 기재부에 등록된 "원가계산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산정함으로써, 가장 신뢰도가 높은 표준교육비용이 산정될 수 있을 것이다.

총괄원가 = 적정원가 + 적정투자보수

5. 표준보육비용 이상의 보육료지원의 법제화 필요성

앞서 말한 것처럼, 완전한 무상보육정책이 실현되려면, 정부는 매 3년마다 합리적 인 방법으로 표준보육비용을 산정하여 발표해야 하며, 그 표준보육비용 이상으로 무상보육료를 지원함으로써, 부모들의 보육료 부담을 완전하게 해소시켜 주어야 하고, 민간 가장어린이집은 운영자들은 적정보육비용을 지원받아서,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이상적인 보육정책의 모습이 라고 여겨진다.

그러한 이상적인 무상보육정책을 완성하고자 하는 바람과 열망들을 모아서, 최근에 여유아보육법의 개정안이 3건이나 발의되었음을 알 수 있다.

2019년 4월 김세연 의원, 임이자 의원, 5월에는 김동철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 되어 있는데, 주된 내용은, 다같이 "정부는 표준보육비용의 조사 후 즉시 공표해야 하고, 표준보육비용 이상의 보육료 지원을 의무화하고, 시.도지사의 보육료 수납한도액 결정시에는 표준보육비용 이상으로 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법률개정안이 신속히 처리되어 무상보육료 전액이 중앙정부 예산으로 편성되어야 한다는, 발제자의 견해에 100% 공감한다.

또한 개정법률 안이 통과되기 이전이라도, 현행 영유아보육법 제34조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는 무상보육료를 표준보육비용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기 때문에 표준보육비용과 중앙정부 지원액과의 차액은 지자체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야한다는, 발제자의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자 한다.

<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영유아보육법 일부 개정법률 안 (김세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9710 발의연월일: 2019. 4. 9.

발 의 자 : 김세연.박명재.유승민 김석기

.김선동.김상훈 곽대훈.박완수.성일종 조경태.임이자.정진석 김규환.정태옥. 이철규 김광수.이명수 의원(17인)

제안이유

현재의 무상보육은 올바른 보육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예산인 <u>표준보</u>육비용과 정부 보육료 지원 단가라는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그야말로 무상보육의 구색만 갖춰놓고 보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는 실정임.

이에 정부가 조사한 표준보육비용 등을 공표하게 함으로써 올바른 보육서비스 제공에 필요로 하는 보육비용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보육비 등이 표준보육비용보다 낮게 책정되지 못하도록 법률로 명시하여 국가적으로 보육의 질이 하향평준화하는 우려를 차단하고 자함.

주요내용

표준보육비용의 공표를 의무화하고(안 제34조제7항), 무상보육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 중 보육료는 표준보육비용보다 낮게 정할 수 없도록 하며(안 제34조제4항), <u>시·도지사가 상한을정하는 이용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경비 또한 표준보육비용 단가범위를</u>적용하도록 함(안 제38조).

6. 충남 민간보육료 수납한도액 및 지원액 수준은?

1) 민간어린이집 수납한도액은 적정한가?

충남도가 영유아보육법 제38조에 의거, 2019년 1월에 발표한 2019년도 민간어린이집 보육료 수납한도액 수준은, 2013년 정부기관발표 표준보육비용의 약 82%~88% 수준에 불과한 아주 낮은 수준으로써, 양질보육을 위한 적정보육료 수준과는 큰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

2019년 충남 민간보육료 수납한도액 분석

구 분	2013년 표준보육비용(하)	2019년 무상보육료지 원	표준보육비용 대비 과부족액	표준보육비용 대비 과부족율
0세	830,500	939,000	+ 108,500	113.06%
1세	598,300	664,000	+ 65,700	110.98%
2세	482,400	510,000	+ 27,600	105.72%
3세	366,500	301,450	- 65,050	82.25%
4~5세	328,700	288,260	- 40,440	87.69%

2) 민간어린이집 무상보육료 지원액은 적정한가?

한편으로, 정부와 충남도가 부모들의 보육료 부담 경감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 제34조 및 제36조에 의하여, 충남 민간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들의 부모에게 지원하는 무상보육료는 2013년 정부기관발표 표준보육비용의 약 81~86% 수준에 불과한 낮은 수준으로써, 양질보육을 위한 100% 무상보육 비용의 지원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2019년 충남 민간어린이집 무상보육료 지원금액 분석

구 분	2013년 표준보육비용(하)	2019년 무상보육료지원	표준보육비용 대비 과부족액	표준보육비용 대비 과부족율
0세	830,500	939,000	+ 108,500	113.06%
1세	598,300	664,000	+ 65,700	110.98%

2세	482,400	510,000	+ 27,600	105.72%
3세	366,500	297,000	- 69,500	81.03%
4~5세	328,700	284,000	- 44,700	86.40%

3)최저임금 인상율에 못 미치는 보육료의 낮은 인상율

아래 표에서와 같이 2014년부터 2019년까지 6년간의 최저임금 총인상율은 57% 증가하였으나 보육료 인상율은 13.7%에 그치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급상승한 최저임금 인상율을 전혀 반영하지 않는 충남 민간보육료 수납한도액은 보육현장의 실태를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 할 수 있다.

민간 어린이집의 운영부실과 폐원 등의 중요한 원인으로서 정당한 이유와 논리적 사고로는 이해하기 어려워 보이며 합리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과도한 행정 간섭이 될 수 있다.

특히 최근 2년간 36%의 최저임금 인상율 대비 충남 민간보육료 수납한도액 인상율은 5.5%에 불과하기 때문에 보육기관을 운영하는 원장님들은 원가미만의 낮은 보육료에 대한 불안과 최소한의 운영조차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을 토로하고 있는 실정이다.

< 최저임금 상승률 대비 보육료 인상률 >

(단위: %)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6년간 합계
최저임금 인상률	7.2	7.1	8.1	7.3	16.4	10.9	57.0*
충남민간 보육료 인상률	2.0	3.0	1.5	1.0	4.7	1.5	13.7
 인상률 차이	5.2	4.1	7.6	6.3	11.7	9.4	43.3

^{*} 퇴직금과 4대 보험료 인상률을 합하면 실질 인건비 인사률은 68%가 되며, 실질임금인상률 68% 대비 보육료 인상률 13.7%와의 차이는 54.3%임.

6. 충남 민간보육료 현실화, 안 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1) 민간보육료 현실화 대한 책임의식의 결여 → 양질보육 방해

최소한 2013년 정부발표 표준보육비용 수준의 무상보육료 지원 또는 보육료 수납 한도액의 보장 없이는, 양질보육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는 분명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충남도가 양질보육이 불가능한 수준의 저가보육료 정책을 고수하는 것은, 중대한 책임회피요 일종의 직무유기와 다름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자 한다.

양질보육의 제공이라는 책무는, 원장과 교사와 더불어, 보육료 지원금액 및 수납한도액의 결정권한을 갖고 있는 정부와 지자체에게도 부여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지자체는 100% 무상보육료 지원 요청시에는 예산부족을 핑계로 삼고, 보육료 수납한도액 인상 요청시에는 타시도의 보육료 수준 (합리적인 근거가 전혀 없는 저가보육료 정책 담합의 결과로 전국이 모두 표준보육비용 이하임) 및 부모부담을 이유로 내세우면서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은, 충남 민간보육료 현실화를 방해하는 주된 이유라고 분석하고 있는, 발제자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2) 전국 최초의 과도한 복지 및 교육예산 지원의 문제점

① 2019년부터 충남아기수당 226억원 집행

충남도는 2019년도에 전국최초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아기수당을 226억을 편성 집행하고 있는데, 100% 무상보육비 지원을 완성하지 않은 채 전국최초의 아기수 당을 신설 지급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이고 타당하며,출산 장려에 효과적인가?

② 2019년부터 고교 1,2년생 무상교육비 441억원 집행

2019년부터 전국 최초로 고교 1~ 2학년 전체 학생의 무상교육비 441억원을 전액 도비(시군비포함)예산으로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는 현실에서, 민간보육료 예산 117억원(2019년 서울시 기준금액 편성시 추가소요액) 이 없다?

③ 2019년부터 고교 1,2,3년생 무상급식비 428억원 집행

2019년부터, 충남도는 교육청 업무관할인 도내 고교생 전원의 무상급식비 예산으로 428억원을 편성 지원. 민간어린이집의 유아반 무상보육료 지원금 현실화에는 왜 그리도 인색한지?

④ 사립유치원 만5세아 무상교육비 약 65억원 예산지원 예정

2020년부터 충남도는 충남교육청과 함께 충남도내 사립유치원 만 5세아 약 6,000 명의 부모부담 교육비 해소를 위한 보조금 20만원 지원예산을 편성하고자 계획 중이며, 그 중에서 8~10만원, 총에산 약 약 65억원 을 충남도 예산으로 지원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민간어린이집 보육료 현실화를 뒤로 미룬 채, 사립유치원 교육비 예산지원에 앞장?

⑤ 유치원 급식비지원금 51억원 지원

충남도내 유치원생 약 28,188명에 대하여 매월 31,166원(1일 1,700원) 씩 지원하기 위하여 년간 50.73억원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중인데, 매월 31,166원씩 차별적으로 사립유치원에 더 많이 지원하는 현상을 개선하지 않는 것은 민간어린이집 차별정책? 보육정책의 기조를 근본적으로 혁신해야 될 시점에 왔다고 보여 진다.

충남 무상교육 및 양육비 도비예산 지원 현황

구 분	2019년 집행	2020년 예정	비고
유치원 급식비지원	50.73억원	계속 유지	민간어린이집
(사립 1인당 월 31,166원)	50.73 국 전	715 1171	미지원
고교 무상급식비(1,2,3학년)	427.75억원	계속 유지	전국 최상위
친환경급식현물지원(유,초,중,고,특수)	229.80억원	계속 유지	전국 최상위
(유치원 1일 280원, 220일)	229.00 구전	게득 표시	선거 띄경지
고고 무상교육비(1, 2학년)	441.39억원	계속유지	전국 최초
사립유치원 5세, 무상교육비	0	약65억원	전국 최초
충남아기수당(12개월 미만, 월 10만원)	226.00억원	계속유지	전국 최초

출처 : 충청남도 의회 내부자료 분석.

3) 민간보육료 수납한도액 결정시스템의 문제

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지난 4월과 5월 중에 발의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3개에서 보았듯이, 무상보육료 정부지원 단가를 표준보육비용 이상으로 의무화하거나, 아니면 시도지사가 결정 고시하는 보육료 수납한도액 단가를 표준보육비용 수준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법안이 개정된다면, 도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절차의 문제점을 거론할 필요가 없겠으나, 현재 상태에서는 그동안 보여준 충남 도보육정책위원회의 민간·가정보육료 수납한도액 심의과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① 민간·가정어린이집 정상운영을 위한 적정보육료 산정자료 미공개

적정 보육료 산정 방법 및 산정 금액 등의 관한 회의 자료의 공개를 일체 불허하는 것은 밀실행정, 권위주의적인 독단행정의 모습으로써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심의 결과를 기대하기가 불가능한 형태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② 민간·가정어린이집 운영자 대표의 심의회의 참석배제

도내 총 보육기관 수 1,856개소 중 82.3%인 1,527개소(민간 607개, 가정 920개)나 되는 민간·가정어린이집의 보육료수납한도액을 심의하는 보육정책위 회의 15명 위원중에는 민간 원장 1인뿐인데, 그나마, 보육료안건 심의 시에는 이해당사자 제척규정을 근거로 민간어린이집 대표는 심의과정에 참여가 배제되는 현행 운영방식은 개선되어야 한다.(혹자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6조(보육정책위원회 구성)를 엄격하고 좁게 해석하는 형식논리적인 입장에서 정당한 운영 방식이라고 항변하겠지만, 그러한 형식논리를 탈피하여 실질성과 현장성을 중시하는 열린 행정의 마인드로 본다면, 분명히 문제가 많은 것이다. 그 대안으로써, 영유아보육법제6조(보육정책위원회)제1항 단서규정을 근거로 하여, 가칭, 보육료산정 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면, 민간·가정어린이집 대표 1/3, 학부모 대표 1/3, 공무원·전문가 1/3, 동수로 참여하여 상당기간동안 수차레 심도 있게 심의하는 논의구조가 될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합리성, 공정성,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③ 보육정책위 심의결과와 도지사 결정권한의 혼동 문제

현행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정책위의 보육료수납한도액 등에 대한 심의 절차의 의미는, 도지사가 보육료 수납한도액을 최종 결정하기전에 자문을 구하기 위한심의과정인 것일 뿐, 마치 의회의 예산안 심의 가결에 따른 구속력이 발생하는 것과 같은 최종적인 확정가결 절차가 아님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충남도는보육료 수납한도액에 대한 최종 결정권자는 도지사가 아니고 마치 충남 도보육정책위원회인 것처럼 그 권능을 혼동하여 운영해 옴으로써, 도지사가 보육료 수납한도액 최종결정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깊은 성찰과 고민을 통하여, 보육료 현실화를 앞당길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는 것과 같은, 우를 범하게 되었다고 본다

아래에 게재한, 충청남도와 서울특별시의 보육료 수납한도액 등에 관한 공보자료를 상세히 비교 분석해 보면, 상당한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엄격하게 말하면, 충남도는 도지사가 보육료 수납한도액을 정식으로 결정 고시하지 않고 있다. 라고 비판 받을 수도 있는 상태다.

< 충남 및 ,서울시의 보육료 관련 공고문 차이점 비교표 >

구 분	충 남	서 울
공고문 형식(제목)	보육정책위 심의결과 공고	보육료 수납한도액 등 공고
보육료 수납한도액 결정권 근거	잘못 인용(틀렸음)	영유아보육법 제38조
보육정책위 기능에 대한 근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7조	표시 할 필요 없음
민간· 가정 구분	보육료 수납한도액 구분(차별)	보육료 수납한도액 미구분(동등)
보육료 수납한도액의 현실화 정도	표준보육비 82%~86%	표준보육비 95% ~101%
기타필요경비의 탄력성 정도	시군별 탄력적용 불허	자치구별 탄력적용 허용

충청남도 공고 제2019-169호

2019년 충청남도 보육정책위원회 심의결과 공고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7조 및 충청남도 영유아 보육 조례 제5조에 의거 충청남도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 다.

> 2019년 1월 29일 충청남도지사

■ 심의결과

(단위 : 원)

	구	분	수납 주기	2019년 결정액	비고
보육교/	나 교육	원 등록금	연	1,850,000	전년 금액으로 동결
	민간	만3세	월	301,450)
보육료	민산	만4세 이상	월	288,260	신년내비 .3%
수 납 한도액	기 점	만3세	월	311,600	│ 이산 ┃
	가정	만4세 이상	월	303,480	
	입학	준비금	연	90,000)
	특별학	활동비	월	90,000	
필 <u>요</u> 경비	현장학	학습비	연	200,000	
수 납	차량	<u></u> 오행비	월	30,000	전년 대비 행사비 3만원 인상
한도액	행사 [‡] (앨범	비 비, 액자비 등)	연	100,000	
	아침	· 저녁 급식비(1식)	월	아침 1,000 저녁 1,500	
	특성화 비 용	개 인 별 교재교구비	월	30,000	

※ 시행일: 2019.3.1.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9- 호

서울시 어린이집 보육료 등 수납한도액 및 반별 정원 탄력편성 기준 공고

「영유아보육법 제38조」(보육료 등의 수납)에 따른 '2019년 서울시 어린이집 보육료 등 수납한도액'과 2019년 보육사업 안내(보건복지부)에 따른 '2019년 서울시 어린이집 반별 정원 탄력편성'을 결정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일 서울특별시장

□ **2019년 보육료 수납한도액** (원/월/1인)

구 분	정부지원(서울형포함)	정부미지원
만0세(맞춤반)	454,000원(354,000원)	454,000원(354,000원)
만1세 (맞춤반)	400,000원(311,000원)	400,000원(311,000원)
만2세(맞춤반)	331,000원(258,000원)	331,000원(258,000원)
만3세	220,000원	348,000원
만4세	220,000원	331,000원
만5세	220,000원	331,000원

[※] 정부지원어린이집 만0~5세 및 정부미지원어린이집 만0~2세 보육료 수납한도액은 '19년 보건복지부 보육료 지원단가와 동일하게 결정(보육료 지원단가 변경시 그에 따름)

□ 기타 보육료 수납한도액

구 분	정부지원어린이집	정부미지원어린이집			
방과후보육료	100,000원	만 5세 수납한도액의 50%			
장애아보육료	464,000원(방과후	464,000원(방과후 232,000원)			
시간연장보육료	시간당 3,100원(장애아 4,100원)				
야 간 보 육 료	연령별 정부지원단가 100%	연령별 수납한도액 100%			
24시간보육료	연령별 정부지원단가 200%	연령별 수납한도액 200%			
휴 일 보 육 료	일보육료(월보육료 정부지원단가/보육가능일수)×150%				
시간제보육료	4,000	원			

^{※ 2019}년 보건복지부 기준 변경시 그에 따름

□ 2019년 특별활동비 수납한도액

정부지원어린이집(서울형포함)	정부미지원어린이집
60,000원	90,000원

□ 2019년 기타필요경비 수납한도액

항 목	주기	수납한도액
입 학 준 비 금	연	전년 대비 자치구별 수납한도액의 110% 이내
	긴	(단, 최대 수납한도액은 100,000원 이내)
 행 사 비	연	전년 대비 자치구별 수납한도액의 110% 이내
	12	(단, 최대 수납한도액은 85,000원 이내)
현 장 학 습 비	분기	85,000원 이내에서 자치구 위임
차 량 운 행 비	월	전년 대비 자치구별 수납한도액의 110% 이내
자랑 正 뻥 미 		(단, 최대 수납한도액은 55,000원 이내)
급 식 비	월	전년 대비 자치구별 수납한도액의 110% 이내
	旦	(단, 최대 수납한도액은 1식 2,000원 이내)
시·도 특성화비	월	전년 대비 자치구별 수납한도액의 110% 이내
시 그 국정되미	본	(단, 최대 수납한도액은 40,000원 이내)

7. 충남 민간보육료 현실화방안 제시

1) 2019년도 서울수준의 차액보육료 지원 방안

내년도 충남민간 가정 유아반 보육료 지원액을 금년도 서울시 수준으로 인상하려면 유아 1인당 매월 50,000원 정도 인상하면 되는데, 년간 총예산은 약 117억원의 추가 예산이 소요되는바, 이 정도의 금액은 충남도의 예산규모에비추어 볼 때에, 도지사의 결심만 있으면 충분히 편성 가능한 금액이라고 볼 본다.

약 117억원 = 약 19,500명 x 50,000원 x 12개월

* 월 4만원 인상시 : 약 94억원 = 약 19,500명 x 40,000원 x 12개월

< 2018년. 2019년 충남 및 서울시의 민간보육료 수납한도액 비교표 >

¬ н		충청남도		서울특별시			
구 분	2018년	2019년	인상액(율)	2018년	2019년	인상액(율)	
만 3세아	297,000	301,450	4,450 (1.5%)	303,000	348,000	45,000 (14.9%)	
만 4~ 5세	284,000	288,260	4,260 (1.5%)	288,000	331,000	43,000 (14.9%)	

또한 도지사에게 법적으로 지원의무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도 않는 고교생무상교육비와 고교생 무상급식비로 각각 441억원 및 427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전국 최초로 유일하게 아기수당을 신설하여 매년 226억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충남도의 재정상태에 비추어 볼 때, 그것도 도지사에게 무상보육료 지원에 대한 법적 의무가 명시되어 있는 민간가정어린이집 재원 유아들의 무상보육료를 표준보육비용 수준으로 현실화시켜서 양질보육의 기반을 확실하게 조성하는데 사용토록, 지원해 달라는 요구는 지극히 정당하고 타당하며 시의적절하다고 본다.

특히, 내년도에 충남도내 사립유치원 만 5세아 약 6,000여 명에게 매월 8 ~10만 원씩 무상교육비로 지원할 예산 소요액 약 65억원 및 도내 민간가정어린이집 재원 만 5세아 약 6,500여 명에게 매월 약 13만원씩 특별활동비 부담금 충당용으로 지원할 예산 소요액 약 101억원을 합산하면 166억원이 되는데, 이 예산을 가지면, 민간가정 어린이집 유아반(3~5세) 보육료 현실화 비용 약 117억원을 충당하고도

남는 금액이다. 보육현장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방법을 찾아본다면 가능하리라고 여겨진다.

< 2020년 충남도청 만5세아 교육비 및 특별활동비 예산지원 계획 >

충남도의 교육비 예산지원 계획	민간보육 현장의 요구(보육료 현실화)		
사 업 명	금 액	만 3, 4, 5세 보육료 지원금 5만원 인상	
사립유치원 5세 무상교육비 지원	약 65억원 (6,000명X 9만원 X 12개월)	117억원	
민간가정어린이집 5세 특별홛동비 지원	약 101억원 (6,500명X 13만원X 12개월)	(19,500명X 5만원 X 12개월)	
합 계	약 166억원	117억원	

2) 시군별 민간보육료 수납한도액 차등 적용의 필요성

만일에 내년도에도 무상보육료 지원금액의 현실화가 정이나 어렵다면, 차선책으로 써 민간보육료 수납한도액을 지역별 여건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때가 되었다고 본다. 같은 충남이지만 시지역과 군지역은 소득수준 및 교육열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시지역과 군지역에 대한 민간 보육료 수납한도액을 차등하여 다르게 정하는 것도 현실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영유아보육법 제38조는 처음부터 이런 점을 예상하고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고서 천편일률적으로 동일하게 저가 보육료 수납한도액을 강요해오고 있는 것이, 더 반 법률적이라고 본다.

영유아보육법 제38조(보육료 등의 수납)

제12조 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그 어린이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범위에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시·도지사는 필요시 어린이집 유형과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그 기준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개정 2011.6.7]

마치며,

우리 속담에, "싼게 비지떡이다" "값싸고 좋은 것은 없다"라는 말도 있듯이, 보육서비스의 질도 같은 이치라고 본다. 이제는 제값을 주고 제대로 된 서비스를 당당하게 요구하는 시대이다.

전국 최초의 아기수당과 고교무상 교육비 예산을 선도적으로 편성 지원하는 충남 도답게, 7년 전 표준보육비용 보다도 훨씬 낮은 저가보육료 담합정책의 낡은 틀을 앞장서서 혁파하고 혁신해야 한다.

충남 민간 어린이집 보육료 현실화, 우리가 해야 할 책무입니다

장 희 선 어린이집 학부모 대표

■ 어린이집은 제2의 가정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라는 말처럼 영유아시기는 그 사람의 근본을 결정지을 만큼 중요합니다.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그 보다 앞선 0세부터 어린이집에 다닙니다. 아이의 하루, 깨어있는 13~14시간 중에서 6시간 이상 그것도 가장 활동적이고 핵심적인 시간을 보내기에 어린이집이 제2의 가정으로 역할을 한다고 해도 과언을 아닐 텐데요.

잊을 만 하면 보도되는 어린이집관련 문제를 듣다보면 안타까움을 넘어 화도 나고 왜 이런 걸까 답답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던 중 부모모니터링사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현재 부모모니터링 단원으로 3년째 현장을 직접 점검하다 보니 대부분의 원들은 정말 잘 하고 계셨습니다. 엄마인 나 보다 아이의 권리를 더존중해주고, 아이를 위한 음식의 크기와 간을 고려해 따뜻한 밥을 챙겨주시죠. 가정에 있는 냉장고 보다 더 청결하니 반성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린이집에 모니터링을 나가면 정말 많은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힘들다고 합니다. 제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님을 알면서도 푸념 섞인 넋두리가 끊이지 않는 걸 보면서 어린이집 운영이 원장이라는 개인의 능력이나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재정적인 자립이 어려워 많은 원장들이 어린이집 폐원이라는 극단적 선택의 위협을 받는 처지라면, 그 불안함과 피해가 온전히 내 아이에게 전달될 것은 너무나 자명한 것 아닐까요?

오늘 이 토론회의 본질은 '제 2의 가정'어린이집에서 내 아이가 좀 더 나은 환경의 보육과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데 있습니다. 그러기위해 보육환경의 개선이 필요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보육료의 현실화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 민간 어린이집 운영이 그렇게 힘든가요?

현장에서 만난 원장 선생님들은 원을 운영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합니다. 실제로 많은 수의 어린이집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2019년 4월 21일 대전일보 보도(대전 어린이집 3년 새 280여개 사라져)에 따르면 대전의 어린이집은 2016년 1,584 개소에서 2017년 1,505개소, 2018년 1,406개소로 매년 가파른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7년 422개소였던 민간 어린이집은 45개소가 감소해 현재는 377개소가 남아 있다고 합니다.

원을 운영하는데 있어 어려움의 요소는 몇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일단 역대 최 저로 출산율이 감소하면서 아이가 줄었을 것이며, 최근 2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크게 상승하면서 인건비의 비중이 커졌을 것입니다. 원생이 줄고 지출은 많아지 니, 원을 운영하기 어려워 비용을 줄이기 위해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며, 문을 닫는 원도 늘어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일반 회사가 시장성이 작아지면서 그 사업의 크기가 줄어드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면 민간 어린이집은 아이들을 보육과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이기에 지자체 및 다양한 지원을 통해 운영을 도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와 충남도가 부모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영유아보육법 제34조 및 제36조에 의하여 충남 민간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들의 부모에게 지원하는 무상 보육료는 2013년 정부기관 발표 표준 보육비용의 약 81%~86% 수준으로 양질 보육을위한 100% 무상 보육비용의 지원과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9년 충남 민간 유아보육료 인상률은 1.5%(월 4,450~4,260원)으로 4~5세아월 보육료 수납단가가 288,260원입니다. 이 수준은 앞서 말한 2013년 정부발표 표준보육료 328,400원에 아직도 87.7%에 불과한 저가보육료에 해당합니다. 그에반해 서울시의 경우는 2019년 4~5세 보육료를 2018년 대비 14.9%(43,000원)를 인상해 331,000원으로 현실화 시켰습니다.

부모들이 내는 보육료 또한 충남도가 영유아보육법 제 38조에 의거해 2019년 1

월 발표한 '2019년도 민간 어린이집 보육료 수납한도액'수준은 2013년 정부기관이 발표한 표준 보육비용의 약 82%~88% 수준으로 지원금과 수납한도액, 두 가지 모두 7년 전인 2013년 정부기관에서 발표한 표준기준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내년도 충남 유아반 보육료 지원액을 금년도 서울시 수준으로 인상하려면 유아 1인당 매월 50,000원 정도 인상하면 되는데 총예산은 년간 약117억 원의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정도의 금액은 충남도의 예산규모에비추어 볼 때 충분히 편성가능한 금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을 운영하는 원장은 본인의 인건비는커녕 아이들의 급식비, 교사들의 인건비등등 모든 비용에 매월 고통 받고 있습니다. 정말 보육료 현실화가 조속히 진행되어야 할것입니다.

■ 아이 한 명을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

충남도는 아이를 낳아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아기수당 제도를 신설해 충남에서 태어난 아기에게 출생 월부터 12개월까지 매월 10만원씩 지급하고 있으며, 충남도내에서 고등학교 무상교육과 무상급식, 중학교 무상교복 등 3대 무상교육을 시행한다고 지난 3월 6일 양승조 도지사가 직접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유치원 급식비 지원 등 앞으로도 교육 과정 속에서 더 많은 지원이된다고 하니 부모 된 입장에서 싫어할 수 없다고 봅니다.

다만, 모든 교육 과정은 공평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전제에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 어린이집 보육료 현실화는 앞서 시행하고 있는 혹은 시행할 지원 사업과 함께 같은 테이블에 놓고 판단을 해야 합니다. 더욱이 불이익을 당해도 말 못하는 영유아이기에 우선적인 관심과 개선이 필요합니다.

'아이 한 명을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부모를 제외하고도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희생을 통해 한 명의 아이를 키울 수 있다는 뜻일 겁니다.

내 아이가 가장 처음으로 경험하는 '제 2의 가정'이 어린이집입니다. 학부모를 대표해서 이 자리에 있는 저는 내 아이가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보육과 교육을 받길 원합니다.

현재 충남도의 민간 어린이집은 재정적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이건 남에 일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의 일입니다. 그리고 나의 일이기도 합니다. 모쪼록 이토론회가 마중물이 되어 충남 민간 어린이집 보육료 현실화가 되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희망하며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육료의 현실화

손유경 안전지도자협회 사무국장

'영유아의 보육은 나라의 미래'

최근 저 출산이 극심해지는 상황에서 어린이 보육의 투자를 확대하고 보육의 질을 높인다는 국가의 정책은 당연한 기조라 생각한다.

정부의 이러한 정책이 현실화가 되지 않아 영유아 보육 시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학부모는 보육의 질, 보육교사는 근무 환경, 원장은 운영의 어려움에 대하여 호소하고 있다. 현실적인 대안 없이 탁상공론으로 이어졌던 그 동안의 정책을 현실화 하는 방법만이 이를 극복할 수 있다.

보육료를 보조받고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지만 현장체험학습비, 생일잔치, 특기활동 등 추가되는 비용은 고스란히 부모의 몫이고 노동정책에 따라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보육교직원의 급여와 임금과 무관하게 가중되는 업무로 이직률 또한 높은 보육교직원의 실태만 보더라도 지금의 정책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보육비용산출결과>

구 분	보 육 비 용 산 출 결 과
	■2015년 연구 결과를 기준으로 연령별 1인당 1일 급간식비에 지난 2년간의 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급간식비	산출
	■0세 31,500원, 1-2세 39,400원, 3-5세 56,300원
교 재	■2015년 연구 결과를 기준으로 2015-2017년 기간 동안의 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산출
교구비	■0세 46,700원, 1세 42,300원, 2세 30,900원, 3세 40,800원, 4-5세 35,100원
	■2016년 어린이집 결산자료의 목 수준에서 여비, 수용비·수수료 등, 연료비, 업무추진비, 직책급, 회
관 리	의비를 합산하여 영유아 1인당 월평균 지출액 산출
운영비	■20인 66,800원, 50인 47,100원, 77인 42,400원, 97인 39,100원, 124인 37,200원, 142인 36,400원,
	169인 34,400원
	■건축비, 놀이터 설치비, 자산 취득비, 시설장비 유지비로 구성하여 건축비와 놀이터 설치비는 기존
시설비	선행연구의 산출결과를 활용하고 자산 취득비와 시설장비 유지비는 어린이집 세출결산 자료를 기준
시설미	■20인 20,100원, 50인 23,800원, 77인 23,700원, 97인 23,700원, 124인 23,100원, 142인 23,200원,
	169인 23,100원
	■1안 : 인건비 기준을 전체 어린이집 평균을 적용하여 산출(97인 규모 어린이집)
보육비용	■0세 987,000원, 1세 691,500원, 2세 551,900원, 3세 407,900원, 4-5세 364,800원
<u> </u> 포폭미공	■2안 : 인건비 기준을 국·공립 어린이집 평균 수준으로 인상하여 적용
	■0세 1,040,600원, 1세 724,100원, 2세 575,500원, 3세 419,400원, 4-5세 373,700원

출처 : 박진아·김금진·윤지연(2017). 표준 보육료와 교육비 산출 연구(V). 육아정책연구소.

어린이를 위한 양질의 보육서비스는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과 급간식 제공, 창의적이고 융복합형 인재양성 교육프로그램, 우수한 교사와 안정된 관리 운영이 기본일 것이다.

이 기능과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에 따른 제반 비용이 필요하므로 적정보육비용이 수반된다. 그러나 보육비용 산출 결과를 보면 어린이 1인당 1일 1,500~2,800 원의 급간식비와, 2,000원이 조금 넘는 교재 교구비 비용이 산출되어 있다. 이 금액으로 무엇을 먹이고 어떤 것을 가지고 가르칠 것인지 묻고 싶다. 매일 우유만 먹고 색종이만 가지고 수업을 하라는 것인가? 특히 유아의 경우 '유아표준보육'과 비교했을 때 현재 정부지원금이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낮은 보육료 수납으로 보육서비스의 저품질을 가속화하고 있으므로 지금의 보육 정책은 합리적인 정책이라 할 수 없다.

<최저임금 상승률 대비 보육료 인상률>

(단위: %)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6년간 합계
 최저임금 인상 률	7.2	7.1	8.1	7.3	16.4	10.9	57.0*
충남민간보육료 인상률	2.0	3.0	1.5	1.0	4.7	1.5	13.7
인상률 차이	5.2	4.1	7.6	6.3	11.7	9.4	43.3

^{*}퇴직금과 4대 보험료 인상률을 합하면 실질 인건비 인상률은 68%가 되며, 실질 임금인상률 68% 대비 보육료 인상률 13.7%와의 차이는 54.3%임.

2014년부터 2019년까지 6년간의 최저임금 총 인상율은 57% 증가하였으나 보육료 인상율은 13.7%에 그치고 있다.

물가 상승과 최저임금 인상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다.

보육료의 70%이상이 교사 인건비인데 이는 그만큼 교사의 적정 임금도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뿐 아니라 현재 보육 교사는 휴식권이 보장되어 있다. 그러나 한 교사가 휴식을 할 동안 그 반은 다른 반 교사가 보도록 되어 있다.

농어촌 지역의 만2세 9명과 만 3세 19명이 있을시 한 교사가 휴식을 하면 다른 교사가 28명가량 어린이를 1시간을 보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물 한잔 마시기 어렵고 화장실 한 번 가기 어렵다는 말은 현실이다.

OECD국가 평균 보육교사 1인당 원아 수는 5명이다. 그런데 이에 반하는 정책은 정상적인 보육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보육시간 외에도 평가인증과 다음날의 수업준비 등 과중한 업무가 남아 있다. 이러한 근무환경은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오래 근무하기 어려우니 우수한 교사는 빠져나가고 보육의 질은 낮아질 수 밖에 없다. 보육교사 자격증을 가지고도 일을 하지 않는 분들이 많은 것은 이러한 현실 때문이다.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지금의 정책으로 우수한 교직원의 확보가 어렵고 따라서 운영의 어려움은 당연한 결과이다. 근무환경개선으로 우수한 교직원을 확보하고 교사가 자긍심을 가지고 보육에 힘써 어린이들에게 안정된 환경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어린이집 운영형태의 현실화 미반영으로 빚어진 재정적 어려움은 고 스란히 어린이집 운영자의 몫으로 남아있다.

보육교사 인건비 상승률의 절반도 못 미치는 보육료 책정율은 어린이집 운영에 큰 장벽을 만들었고 그 장벽을 무너뜨릴 수 있는 열쇠는, 정부의 인건비 상승률을 반 영한 적정보육료 지원과 정부지원이 부족한 부분에 대한 수익자 부담금만이 해결 점으로 남아있는 현실에, 어린이집 운영자들은 절망적인 심정이 아닐 수 없다.

국가모니터링 지표

■ 증감 추이

- °전체 어린이집수는 '18년 말 기준 39,171개소로 '17년 대비 2.7% 감소함
 - * '17년 : 40,238개소→ '18년 : 39,171개소
 - 어린이집수 중 국공립어린이집이 차지하는 비율은 9.2%(3,602개소)임
 -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은 **82.1%(32,169개소)**를 차지하고 있음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는 '18년 말 기준 1,415,742명으로 '17년 대비 2.4% 감소함
 - * '17년 : 1,450,243명 → '18년 : 1,415,742명
 - 국공립 어린이집에서는 200,783명으로 14.2%를 보육하고 있음
 - 민간과 가정 어린이집에서 1,013,883명으로 **71.6%를 보육하고 있음**

이러한 지표에 따라 국가 정책 방향도 '국공립어린이집의 지속적 확충 및 우수 민 간어린이집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한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도모'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현실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지금은 영유아의 70%이상이 온전한 보육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근무하는 보육교사 또한 열악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원장과 교사 개인에게로 부담을 넘기고 대다 수의 민간 어린이집을 다니는 우리의 아이들은 사회의 시작인 보육에서부터 차별 인지도 모르고 차별을 겪으며 시작해야 하는 지금의 정책은 납득하기가 어렵다.

어린이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과 교육을 받을 기본권이 있다. 정부는 동등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현실을 직시하고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현실적인 보육료 지원은 아이들을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게 하는 바탕이고 교사의 근무환경개선은 근로자의 최소한의 권리이다. 이는 어린이들의 안전한 보육과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경제학자 라즈 체티는 '유치원 교육이 20년 후의 먼 미래의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라는 논문에서 1200명을 대상으로 우수한 교사와 평범한 교사에게 배운 유아들을 27살이 되었을 때 조사하였다. 이 결과에서 소득격차는 1000달러가 나고 대학진학률도 80%와 40%로 배가 차이가 남을 알 수 있다. 또한 '저소득층 아이들이 최고의 교사에게서 최상의 유아교육을 받는다면 성인이 되었을 때 중산층으로 계층 이동을 할 수 있다.' 라는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그만큼 유아보육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한 사례라 할 수 있다.

어린이의 보육은 나라의 미래이다. 국가의 미래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의지만이 이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정부와 지자치제는 양질의 보육이 가능하도록 무상보육을 현실화하기 위해 <u>누리과</u> 정 보육료의 인상과 표준보육비와 누리비 차액을 지자체가 지원해야 할 책무가 있다.

따라서 표준보육비용의 전액 지원 혹은 <u>보육료 수납 한도액의 현실화와 그에 따른</u> <u>차액보육료의 수익자 부담이라도 가능하도록</u>, 충남도와 도의회가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기바란다.

충청남도의 보육정책 현황

이태규 출산보육정책과장		
26470170		
